유엔군사령부 #15259
군우 에이피 96205-0032

유엔사규정 551-4

2003년 9월 22일

한국 정전 협정 준수

추가규정: 유엔사 사령관, 참조: 연인-부 #15255, 군우 에이피 96205-0028 의 사전승인 없이는 예하 사령부에서 본 규정에 대한 추가 부록의 발행을 금한다.

목 차


| | | 항 | 페이지 |
|---|---|---|---|
| 제 1 절 | 총칙 | | |
| | 목적 | 1 | 3 |
| | 적용 | 2 | 3 |
| | 참조 | 3 | 3 |
| | 용어해설 | 4 | 3 |
| | 책임 | 5 | 3 |
| | 방침 | 6 | 4 |
| 제 2 절 | 구성군사령부의 책임 | | |
| | 서언 | 7 | 4 |
| | 총칙 | 8 | 4 |
| | 지상군 | 9 | 5 |
| | 공군 | 10 | 6 |
| | 해군 | 11 | 6 |
| 제 3 절 |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 | | |
| | 책임 및 권한 | 12 | 7 |
| | 총칙 | 13 | 7 |
| | 표지물의 형태 | 14 | 8 |
| | 점검 및 유지 | 15 | 9 |
| | 비무장지대 시설물들의 공사 및 보수 | 16 | 10 |
| | 비무장지대 인원할당 및 인가 | 17 | 10 |
| |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 18 | 11 |
| |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군인/민정경찰 | 19 | 12 |
| | 총기사용 | 20 | 12 |
| | 친교 | 21 | 12 |
| | 훈련 | 22 | 13 |
| |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공동경비구역내에서의 사진촬영 | 23 | 13 |
| | 비무장지대내에서 거주하도록 인가된 대한민국 민간인에 대한 민사행정 | 24 | 13 |
| | 한강하구내의 민간선박 항행에 관한 제규정 | 25 | 13 |
| | 항공기에 대한 경고 | 26 | 14 |


*본 규정은 1986년 4월 25일자 유엔사규정 551-4를 대체한다.

| | | 항 | 페이지 | |
|---|---|---|---|---|
| 제 4 절 | 군사정전위원회 | | | |
| | 총칙 | 27 | 15 | |
| | 배경 | 28 | 15 | |
| | 책임 | 29 | 16 | |
| 제 5 절 | 군사정전위원회 및 관련기구들에 대한 원조 및 지원 | | | |
| | 책임 | 30 | 17 | |
| | 총칙 | 31 | 17 | |
| | 이동 및 경계 | 32 | 18 | |
| |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인원들의 호송 및 경계 | 33 | 18 | |
| | 행정 및 군수지원 | | 34 | 18 |
| | 원조 및 협조 | 35 | 19 | |
| 제 6 절 |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표지 | | | |
| | 신분증 및 출입증 | | 36 | 19 |
| | 완장 | 37 | 22 | |
| | 기타 식별형식 | 38 | 22 | |
| | 차량 | 39 | 22 | |
| | 항공기 표지 | 40 | 22 | |
| | 한강하구 식별표지 | | 41 | 23 |
| |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조중측) 식별표지 | | 42 | 23 |
| | 대한민국 국민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 43 | 23 | |
| 제 7 절 | 위반사건의 보고 및 조사 | | | |
| | 총칙 | 44 | 24 | |
| | 주요 위반행위 | 45 | 24 | |
| | 사소한 위반행위 | 46 | 25 | |
| | 조중측 위반행위 | 47 | 25 | |
| | 보고 | 48 | 26 | |
| | 조사 | 49 | 26 | |
| | 공동감시소조 조사 | | 50 | 27 |
| | 특별조사 | | 51 | 28 |
| | 조사의 범위 | 52 | 29 | |
| |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의 운영지원 | | 53 | 30 |
| | 전술적 고려사항 | 54 | 30 | |
| | 증거보존 | | 55 | 30 |
| | 징계조치 | | 56 | 30 |
| 제 8 절 | 지피 및 오피점검 | | | |
| | 배경 및 권한 | 57 | 30 | |
| | 총칙 | 58 | 31 | |
| | 목적 | 59 | 31 | |
| | 책임 | 60 | 31 | |
| |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인원 | 61 | 32 | |
| 제 9 절 | 영현 등록 업무 | | | |
| | 책임 | 62 | 32 | |
| | 총칙 | 63 | 32 | |
| | 유해의 발굴 및 교환 | 64 | 32 | |

| 제 10 절 | 인원 교체 | 항 | 페이지 |
|---|---|---|---|
| | 책임 | 65 | 33 |
| | 총칙 | 66 | 33 |
| | 정의 | 67 | 33 |
| | 출입항 | 68 | 33 |
| | 절차 | 69 | 33 |

부록 3건

A. 참조 A-1
B. 도식일람표 B-1
C. 유엔사배부처 C-1


## 제 1 절. 총 칙

**1. 목적.** 본 규정은 1950년 7월 7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 1584,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간에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 및 정전협정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모든 추후합의서에 기술된 유엔군사령관의 전반적인 책임을 개설하고 이행하는데 있다.

**2. 적용.** 본 규정은 때때로 대한민국에 배치될 수 있는 모든 훈련병력 또는 기타 외국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해 및 영공에 있는 인원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병력에 적용된다. 본 규정은 또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에 관계되는한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본 규정은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한 현 정전기간중에 적용된다.

**3. 참조.** 필요 및 관련된 발행문건들은 부록 A에 수록되어 있음.

**4. 전문용어 해설.** 본 규정의 목적상:

가.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의 한국 정전협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비무장지대/한강하구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정전협정 제 2권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포함한다.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은 제 3절 및 4절에 정의되고 기술되어 있음.

**5. 책임.**

가.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군측을 대표하는 정전협정의 유일한 서명자로서, 유엔군이 동 협정의 제반조항들을 준수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나.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제반규정과 의무를 이행하고 실시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좌하는 임무가 연합사 사령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이 임무는 연합사 구성군 사령관들을 통해 수행될 것임: 연합사 구성군 사령관들은 지상구성군 사령관,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연합 해병사령관 및 공군 구성군 사령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유엔군 사령관은 또한 하기 사령관들의 지원을 받음:

(1) 구성군 사령관들인 미8군 사령관, 주한 미공군 사령관, 주한 미해군 사령관 및 주한 미해병 사령관 및 주한 특수전 사령관을 통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 미군 사령관.

(2) 대한민국 군당국의 일방적인 통제하에 실시되는 특수전, 대침투 작전 또는 기타 작전에 임하는 모든 한국군 부대 사령관들. 이러한 임무는 유엔군 사령관의 총괄적인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

다. 정전협정 및 본 규정의 제 조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사령관들은 그 시행 지시서를 발전시켜야 함. 그리고 시행 지시서 및 그 변경사항의 사본을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제출하여야 함. 정전업무와 관련하여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와의 직접적인 통신을 허락하며 권장함.

라. 유엔사 군정위 및 그 부속 기관들 (비서처,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단,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전방 비서처, 및 유엔사 군정위 연락장교단) 에 대한 자금 지원은 참조 라에 명시된 바와같이 미 8군 사령관이 제공한다.

**6. 방침.** 정전협정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중의 하나임. 각 지휘관은 정전협정의 제반 조항과 본 규정의 세부사항들을 모든 인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함. 본 규정이나 참조문건들로도 해명되지 않는 의문사항들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조회하기 바람.

## 제 2 절. 구성군 사령관들의 책임

**7. 서언:**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제반규정과 조항들을 준수하고 시행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8. 총칙.**

가. 한국 정전협정은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될때까지 한국전쟁에 개입된 적대 쌍방간의 군사작전을 중지하는데 대한 상호간의 합의이다. 유엔군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전 영토를 포함하는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서 정전협정의 제반조항을 이행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와 본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군 부대들은 정전협정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또한 유엔사측은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측 (조중측)도 실제적으로 가능한한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전협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의 철저한 교육 및 모든 인원들의 효과적인 통제 절차, 그리고 유엔사가 지시한 바와같은 시행조치등이 요구된다.

나. 인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이나 정전협정에 대한 부주의 또는 불성실등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위반행위는 유엔군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적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한국의 정전을 위협하여 전면전을 야기시킬수 있는 상태까지 긴장을 고조 시킬수도 있다.

다.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군부대 지휘관들은 본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직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참여하게 될 모든 인원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철저하게 숙지시켜야 한다:

(1) 정전협정의 기본 조항들.

(2) 정전교전규칙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음) 정전협정 조항들에 의해 부과된 각 개인의 제반 임무와 책임.

(3) 특히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에 있는 지역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인접한 수역 및 동 인접지역 상공을 포함한)에 대한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

(4) 유엔군 사령관의 명백한 승인 없이는 조중측에 소속되거나 조중측과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과의 교제 또는 비공식적인 통신을 금함.

(5) 의심스러운 또는 실제로 발생한 모든 정전협정 위반행위들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과 그러한 위반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6) 유엔사측 및 조중측 인원들의 매장지역 발견의 보고와 정전협정에 따른 이들 유해들의 적절한 발굴 및 처리에 대한 협조.

(7) 대한민국내, 특히 비무장지대 완충지대 부근에서의 항공기 운항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의 숙지 및 철저한 준수의 중요성. 비무장지대 완충지대는 한강하구, 북방한계선 및 군사분계선 연장선 (참조 아 참조)을 포함함.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인원들은 (모든 비행클럽 포함) 이 지시사항들을 숙지해야함.

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는 요청이 있을시 부대 지휘관들이 그들의 인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조언하고 도와야 한다. 본 교육계획에 대한 신청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참조: 작전과장 앞으로 제출하기 바람.

**9. 지상군.**

가.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위반행위들을 예방하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군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수단은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다. 경비와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제공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사용된다. 이러한 민정경찰의 업무는 특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유엔군측 " 을" 구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 갑" 구내에 있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포함하여 비무장지대의 유지와 통제를 포함한다.

나.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책임을 진다:

(1)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남한의 육지에 대한 정전협정 준수를 보장한다 (정전협정 제 14항 참조).

(2) 유엔군사령관의 지시권한에 따라 위반행위들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한다 (참조 나,다,카 및 차 참조).

(3) 한강하구내에서의 선박 및 인원의 운영 및 통제.

(4)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부근 지정고도 이하의 영공에 대한 운영 및 통제.

(5) 항공기 경고 표지판, 비무장지대 남쪽부분내(군정위 본부구역 " 갑" 구의 유엔군측 부분을 제외한)의 안전소로 및 진입로와 한강하구 남방경계선 표지판 등의 점검 및 유지.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구성군 사령관 역시 군사분계선 표지물의 점검 및 유지를 수행함.

(6) 매월 비무장지대에 배치되는 인원의 숫자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에게 통보함.

(7) 유엔사 규정 525-4에 정의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지역을 제외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 을" 구의 유엔군측 부분을 포함한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에 의해) 비무장지대 남쪽부분에 대한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하는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8)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구역을 제외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경계를 제공한다.

(9) 한강하구의 민간선박에 대한 항행규칙을 이행하며 집행한다.

(10)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적절한 증명서를 휴대하고 모든 장비에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제 6 절 참조).

(11)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군정위 관련기구들,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대표단들의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 을" 구의 유엔군측 부분 및 대성동 영농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내에서의 이동의 편의와 협조를 보장한다.

(12) 대성동 영농지역에 대한 경계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 (도표 2-1 참조)

(13)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언제라도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대성동 마을 및 영농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4) 조중측 인원이나 유엔군측 인원에 의해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지역내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들을 보고 및 조사한다. 정전협정 위반사항들의 조사에 대한 지침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서 제공될 것임(제 7 절 참조).

(15) 필요시, 야전군 부대에서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성원을 제공한다 (제 7 절 참조).

(16) 연합사 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모든 인원들에게 선박이 한강하구에 들어가거나 또는 서해안 북방한계선 북쪽 수역 또는 동해안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연장선과 북방한계선 북쪽 수역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숙지토록 적절히 교육시킨다.

(17)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조중측 통제하에 있는 지역상공을 침범한 모든 항공기의 위반행위를 보고하며 유엔군사령관의 지시가 있을시 이러한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10. 공군.**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책임을 진다:

가. 비무장지대 전역, 북한지역 및 이 두 지역에 인접한 수역의 지정고도 이상 영공에 관한 정전협정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정전협정 제 16항 참조).

나. 유엔군사령관의 지시가 있을시, 정전협정 제 16항의 주장된 위반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1. 해군.** 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비무장지대와 대한민국의 인접수역 및 그 상공에 관해서 해군과 관련된 정전협정의 제반조항들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정전협정 제 15항 참조).

나. 정전협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동서해안에서 운행하는 모든 소형 유람선 및 다용도 선박들이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강하구에 들어가거나 서해 또는 동해의 북방한계선 북쪽 수역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한다.

## 제 3 절. 군사 분계선, 비무장 지대 및 한강하구

**12. 책임 및 권한.**

가.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유엔군측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연합사 사령관:

(1) 항공기 경고 표지물과 비무장지대 남쪽부분내의 안전소로 및 진입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책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제외한) 와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지물들을 유지할 책임을 지닌다. 유엔군사령관의 지시가 있을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유엔사측 군사분계선 표지물들에 대한 유지임무를 수행한다.

(2) 유엔군사령관의 지시권한에 따라, 연합사 사령관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 갑" 구 유엔군측 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남쪽부분내에서 유지 및 관리를 포함한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계획하고 이행한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군정위 본부구역 " 갑" 구의 유엔군측 구역과 대성동 영농지역을 포함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지역내에서 유지 및 관리를 포함한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과 대성동의 민사행정 및 경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을 실시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도표 2-1 참조). 또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시, 군정위 본부구역 " 갑" 구의 유엔군측 구역내에 있는 유엔군측 군사분계선 표지물들에 대한 유지업무를 수행한다.

다.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 대대장:

(1) 군정위 본부구역 " 갑" 구와 대성동 영농지역을 포함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작전지역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한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과 대성동의 민사 및 경비에 대한 계획과 방침을 이행할 책임(표 2-1 참조)을 진다.

(2)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역시 유엔사 군정위 본부구역 " 갑" 구내에 위치한 유엔사 군사분계선 표지물의 유지 임무를 수행한다.

**13. 총칙.** 정전협정 제 1 조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를 설정했으며,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포함한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실시할 권한을 각측에 부여했다.

가. 정전협정 쌍방은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 위해 모든 무장병력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씩 철수하도록 합의했다. 군사분계선은 1292개의 군사분계선 표지물로 표시하도록 되었으며 이로써 비무장지대를 남쪽과 북쪽지역으로 분할하게 되었다.

나.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000 미터씩 이격된 폭 4,000 미터의 완충지대이다. 이러한 분리는 전쟁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한다. 남방한계선 철책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개략적인 선을 따라 설치되었다. 지형의 특성상 남방한계선 철책은 모든 위치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정확하게 2,000 미터 이격된 곳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어떤 곳에서는 2,000 미터가 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는 남방한계선 철책의 위치에 관계없이,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00 미터 이격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 2 권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만조시 강물과 육지와의 접촉선이 한강하구와 각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간의 경계선이다. 각측은 한강하구가 비무장상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각측은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강하구에 4척의 경비정과 최고 24명의 민정경찰을 보유하도록 인가되어 있다.

라. 각측은 최대한 1,024명씩 비무장지대 자기측 부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이러한 인원들은 군인 또는 민간인일 수 있으며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수행해야만 한다.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유지작업 및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 인원에는 민간선박 항행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한강하구 출입이 인가된 등록된 민간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기 제 25 항 참조).

**14. 표지물 형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지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분계선 표지물:

(1) 군사분계선은 1,292개의 표지물로 표시되어 있다 (도표 3-1 참조).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표지물의 유지작업을 목적으로 " 갑" 구와 " 을" 구로 분할되어 있다 (도표 3-2 참조). 초기에는 조중측은 " 을" 구에 있는 모든 군사분계선 표지물 유지작업에 관한 책임을, 유엔사측은 " 갑" 구에 있는 모든 군사분계선 표지물들의 유지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 비무장지대 " 갑" 구 군사분계선 표지물 | 좌표* |
|---|---|
| 0001부터 0204까지 | BG 969911부터 CH 054063까지 |
| 0293부터 0442까지 | CH 142194부터 CH 271346까지 |
| 0566부터 0707까지 | CH 465441부터 CH 684402까지 |
| 0862부터 0982까지 | CH 928441부터 DH 115414까지 |
| 1141부터 1231까지 | DH 310474부터 DH 401648까지 |

* 쌍방간에 군사분계선 표지물의 공식적인 좌표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좌표는 단지 개략적인 것임.
* 좌표는 Tokyo-B 지도의 기준점에서 WGS-84의 기준점으로 환산한 것을 나타냄.

(2) 군사분계선은 때때로 강의 중앙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참조 다 참조). 1958년 1월 28일에 열린 제 168차 비서장 회의에서 이루어진 정전협정 서명후의 합의사항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군사분계선 표지물 유지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임진강, 금성천 및 북한강에는 군사분계선이 강의 중앙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표지물들이 이 강들의 양쪽 제방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엇갈리게 설치 되었다 (참조 다).

(가) 조중측은 임진강 및 북한강의 조중측 제방에 있는 다음의 비무장지대 " 갑" 구의 표지물들을 유지하는데 동의하였다:

임진강 - 0350, 0351, 0353, 0357, 0359, 및 0361.
북한강 - 0863, 0864, 0866, 0868, 0870, 0872, 0874, 0876, 0878, 0880, 0882, 0884, 0886, 0888, 및 0890.

(나) 유엔사측은 금성천의 유엔사측 제방상에 있는 비무장지대 " 을" 구의 하기 표지물들을 유지하는데 동의하였다: 0818, 0820, 0822, 0824, 0826, 0828, 0830, 0832, 및 0834.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을시) 이들 표지물들은 연합사 사령관이 지정한 지휘관들이 유지한다.

나. 비무장지대 표지물:

(1)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표시하는 표지판들 (도표 3-3 참조)은 300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표지판은 인접 표지판에서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남방한계선 철책이 비무장지대를 따라 또는 비무장지대 바깥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표지물들은 남방한계선 철색상에 설치해야 한다.

(나) 남방한계선 철책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표지물들은 실제적인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경고표지판들 (도표 3-4 참조)은 비무장지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 및 소로상에 설치하되 남방한계선으로부터 약 180미터 남쪽 지점에 설치한다.

다. " T" 자형 항공기 경고 표지물. " T" 자의 머리부분이 북쪽으로 향해 있는 대형 " T" 자형 항공기 경고 표지물들은 비무장지대내에서 항공기의 비행을 돕기위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 약 2,000 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음. 이 대형 표지물들은 약 2,000 미터씩 이격되어 있으며, 돌출된 지형지물의 남쪽 경사면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 표지물들은 황색 또는 베이지색으로 도색되어 있음.

라. 항공기 경고 표지판. 비무장지대내로의 우발적인 월경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황색으로 도색되고 남쪽으로 향한 항공기 경고 표지판들은 300 내지 400 미터 간격으로,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대략적으로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지형 및 기타 요소로 인해, 주황색 항공기 경고 표지판들이 반드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상에 또는 남방한계선 남쪽에만 위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남방한계선 철책선 과/또는 주황색 표지판들이 실제로는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한 항공기 경고표지판들은 표지판상에 백색의 " X" 자로 표시되어 있음.

마. 한강하구 표지물. 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은 한강하구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선박 운항자와 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십자형 표지물(도표 3-5)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표지물 번호 | 위 치 | 표지물 번호 | 위 치 * |
|---|---|---|---|
| 1 | BG 467755 | 7 | BG 562820 |
| 2 | BG 481749 | 8 | BG 654867 |
| 3 | BG 491738 | 9 | BG 668857 |
| 4 | BG 533751 | 10 | BG 809832 |
| 5 | BG 542783 | 11 | BG 815824 |
| 6 | BG 562787 | 12 | BG 831830 |

* 좌표는 Tokyo-B 지도의 기준점에서 WGS-84의 기준점으로 환산한 것을 나타냄.

바. 비무장지대의 모든 지역은 유엔군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에 의해 지뢰가 제거되었다는 확인이 없는 이상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점검 및 유지.**

가. 비무장지대에 상존하는 위험성 때문에 현재 군사분계선 표지물 유지작업 계획은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중단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표지물 점검 및 유지작업은 유엔군사령관의 명백한 허가를 받은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군정위 본부구역 " 갑" 구에 대한 위와같은 작업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허가하는 유지 작업 인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다. 비무장지대내에서나 군정위 본부구역 " 을" 구 안에서의 점검 및 유지작업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또는 책임지역 지휘관이 임명한 허가된 유지작업 인원들이 수행한다.

(1) 인가될 경우에 군사분계선 표지물의 점검은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과에 의해 수행된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도록 특별한 허가가 없는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군정위 본부구역밖이지만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표지물의 점검을 위해 군사분계선 (임진강, 금성천 및 북한강)을 넘어가야만 하는 경우 공동감시소조 유엔군측 성원만이 점검을 할수 있다.. 이러한 점검은 조중측 성원이 동의하고 이 점검에 그들이 참가할 때에만 실시된다.

(2) 군사분계선 표지물 유지 작업 계획이 재개되면 연합사 사령관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서면 요청서를 최소한 72시간전에 유엔군 사령관 (참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게 제출한다. 서면 허가서를 접수할때까지는 작업을 실시할 수 없다.

라. 남방한계선 및 기타 경고 표지물. 이러한 경고 표지물들의 점검과 유지는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수행하며 특별한 허가가 필요치 않다. (군사분계선 표지물들은 예외)

마. 항공기경고 " T" 자 표지물들은 표지물이 위치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상부대가 점검하고 유지한다.

바. 항공기 경고 표지판. 항공기 경고 표지판의 점검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와 연합사 작전참모부 항공과 (파 및 하 참조)가 매 분기마다 실시한다. 항공기 경고 표지판의 유지작업은 경고판이 위치한 지역의 지상부대가 실시한다. 유지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참조 파 및 하에 수록되어 있음.

사. 유엔사 군정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합사 사령관/또는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군사분계선 표지물, " T" 자형 항공기 경고 표지물, 항공기 경고 표지판, 안전소로, 접근로, 및 오솔길등의 유지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사 군정위에 제출한다.

**16. 비무장지대 시설물의 건설 및 보수**

가.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내에서의 모든 건설 및 보수를 포함하여 비무장지대 유엔군측 부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방책 및 철책 그리고 요새진지들과 윤형 철조망의 보수 및 축조등 정전협정과 관련된 비무장지대내에서의 모든 공사활동은 매 경우마다 유엔군 사령관의 구체적인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나. 유엔사 통제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야전군들은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신축 또는 증축공사 신청을 연합사 사령관, 참조: 작전참모부, 지상작전과에게 제출한다. 연합사 작전참모부는 연합사 공병참모부를 포함, 해당 참모부서와 협조를 거친후, 승인 여부에 대한 연합사의 건의서와 함께 이 신청서를 유엔사군정위, 참조: 작전과에 제출한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비무장지대 공사요청서와 정전협정 준수에 대해 검토를 한후 승인 여부를 위해 유엔사 해당기관에 이 요청서를 보낸다. 일단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유엔사군정위 비서처는 비무장지대 공사요청서를 유엔사의 승인여부와 함께 해당 야전군에 보내기 위해 연합사 작전참모부로 회신한다.

**17. 비무장지대 인원의 할당 및 인가**

가.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내의 인원 할당은 연합사 사령관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각각 월별로 설정한다. 유지 및 경계인원을 포함하여 일시에 총 인원수가 1,024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들 인원은 통상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 연합사 사령관-800명 (3군/1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200명 (군정위 본부구역), 그리고 한강하구-24명이다.

나. 한국군 제 1군 및 3군의 인원 할당 통보는 연합사 사령관, 참조: 연합사 작전처, 지상작전과 앞으로 익월분을 당월 18일까지 제출한다. 이들 보고서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직접 제출하는 인원 할당 보고서와 함께 매월 27일까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도착되도록 발송되어야 한다. 할당 통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될 작업의 대략적인 위치. 책임지역내의 포괄적인 군사분계선 표지물 번호를 사용한다.

(2) 실시될 작업의 종류.

(3) 각 작업장의 인원수.

(4) 차량 및 중장비의 수와 종류.

**18.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가. 비무장지대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하여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목적을 위해 허가된 1,024명 이외의 하기 인원들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1) 유엔사 군정위 인원. 유엔사 군정위 대표 5명, 유엔사 군정위 연락장교단 인원 전원,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보직된 인원 전원.

(2) 공동감시소조 (JOT). 각 공동감시소조는 3명을 넘지 않는 영관급 장교로 구성되고 30명 까지의 지원 인원들로 증원될 수 있다. 이 30명에는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인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전협정에는 총 5개 공동감시소조를 필요로 한다.

(3) 특별조사반 (SIT). 공동감시소조와 같은 편성.

(4)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인원. 이들은 경비상의 요건이 충족하는 한, 중감위 캠프로부터 캠프 보니파스까지의 직선 통로, 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하게 허가한 기타 통로를 통해 통행이 제한없이 허용된다.

(5) 대성동 주민. 1953년 7월 27일 또는 그 이전에 비무장지대 남쪽 부분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한국인 민간인 (배우자 및 자녀 포함)과 유엔사 군정위로부터 허가된 사람은 비무장지대(대성동)내의 거주와 생계를 위하여 남방한계선을 넘어 왕래 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비무장지대 방문객.

(1) 군사정전위원회 쌍방이 공동으로 인가하는 공동경비구역 방문객. 이들 방문객들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와 협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동경비구역 이외의 비무장지대 방문객들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경비구역 이외의 비무장지대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은 비무장지대 출입허가 신청을 최소한 24시간 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정전협정 추후합의서는 쌍방의 공식 승인을 받은 보도 기관 대표가 정전협정 이행에 관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도기관 대표단의 규모 및 전반적인 방문지역을 상대방의 비서장에게 통보하는 조건으로, 쌍방 (유엔군측 및 조중측)은 일일 100명의 보도기관 대표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 하도록 허가 되어 있다. 보도기관 대표들은 유엔군 사령부 공보장교가 지명한 장교 1명 또는 이와 동급의 민간인 1명이 동행한다. 보도기관 대표들은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을 위해 비무장지대/한강하구내에 있도록 인가된 1,024명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도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비서처 행정과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보도반의 규모 및 구성.

(2) 비무장지대 출입 요청 시간 및 장소.
(3)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방문 지역.
(4) 출입 사유.

라.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유엔사측 지역에 인가된 모든 인원들은 해당 교전규칙에 따라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마.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 및 차량들은 정전협정, 정전협정 추후합의서 및 본 규정 제 6절에 따라 적절한 식별표시를 해야 한다.

**19.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유엔사측 민정경찰은:

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유엔군측 지역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 을" 구 유엔군측 지역을 출입하도록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가 인가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인원, 중립국감독위원회 인원 및 기타 인원들을 보호한다.

나. 법과 질서의 유지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 을" 구 유엔군측 지역 또는 대성동 영농지역에 출입하는 민간인 감독에 관한 통상적인 경찰 직책을 수행한다.

다. 인가된 인원들만이 출입하도록 비무장지대내의 진입을 협조한다.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 갑" 구의 출입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조정한다.

라. 비무장지대 표지물, 비무장지대 안전소로 및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지물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시에 따라 유엔군 책임 하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지물들을 점검한다. 필요한 보수 및 유지 작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제출한다.

마. 비무장지대/한강하구내의 모든 아군 및 적군의 활동을 항시 감시하고 정전협정의 위반사항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참고 " 마" 참조).

바. 정전협정 위반자들을 체포한다.

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유엔군측 민정경찰 및 장비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과 장비에는 적절한 식별표시를 하도록 한다 (제 6 절 참조).

**20. 총기 사용.**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 규칙 및 공동경비구역 교전구칙 참조. **비무장지대/한강하구내에서는 어떠한 사격 훈련 (실탄 또는 공포탄 사격), 또는 무기의 시험 발사도 할 수 없다.**

가. 유엔군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은 비자동소총 또는 권총을 휴대하도록 인가되어 있다.

나. 유엔군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은 필요시에만 그리고 참조 아, 자에 따라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유엔군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로 보직된 인원들을 교육하고 브리핑하는 동안 지휘관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내에서의 총기 사용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21. 친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유엔군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및 기타 모든 인원들은 특별한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조중측 인원들과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

**22. 훈련.** 지휘관들은 유엔군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로 보임되는 모든 인원들이 신중히 선발되고 적절한 훈련을 받아 상술한 민감한 업무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발적인 군사훈련 (부대 혹은 진지 점령 훈련) 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허가되지 않는다.

**23.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공동경비구역내에서의 사진 촬영.**

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공동경비구역내에서의 공식적인 사진 촬영은 허가된다.

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공동경비구역내에서의 사적인 사진 촬영은 허가되지 않으나, 다음은 예외:

(1) 게시된 지시에 따른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사진 촬영.

(2) 유엔군 사령관이 허가한 사적인 사진 촬영.

**24. 비무장지대내에서 거주 하도록 허가된 대한민국 민간인에 대한 민사행정(참조 4).**

**25. 한강하구내의 민간선박 항행에 관한 제 규칙.**

가. 정전협정은 동 협정의 공식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강하구의 비무장화를 규정하고 있다. 만조시 수역과 육지간의 접촉선은 한강하구와 각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 사이의 경계선으로 정해져 있다. 한강하구에 그어 놓은 군사분계선은 없다. 또한 정전협정은 일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쌍방의 민간인 선박이 항행하도록 한강하구 수역을 개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전협정 서명후에 이루어진 합의 사항에 의해 규정된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항행에 적용되는 관련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에게 오랜 기간 친숙한 한강 하구에서의 선박 항행에 대한 불문률과 관습은 정전협정의 제반 규정과 본 규정에 수록된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의 선박에 의해 준수된다.

(2) 군사인원, 무기 및 탄약을 운반하는 모든 군용 선박과 민간 선박, 그리고 중립국 선박들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의 인가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에 사전 통보 없이는 한강하구로 들어가지 못한다.

(3)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의 인가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에 사전 통보 없이는 어느 일방도 부표, 부유물, 조명, 판, 기, 혹은 기타 항행안내 보조물이나 표지물들을 한강하구 지역에 축조하거나 설치하지 못한다.

(4) 쌍방 지휘관은 각기 자기측에 적용될 선박 등록 규칙을 정한다. 등록된 모든 선박에 대한 보고서는 기록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에 제출한다.

(5) 한강하구 지역내의 각 함선, 선박 및 주정은 아래에 기술한 모든 규칙에 따르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 각 함선, 선박 및 주정은 선박의 종류, 길이 및 톤수, 주정의 국적, 소유주의 성명 및 국적 그리고 소속 항구가 기록된 등록증을 휴대한다.

(나) 수하를 받으면 각 함선, 선박 또한 주정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

(i) 등록 국가

(ii) 소유주의 성명 및 국적
(iii) 소속 항구
(iv) 출발 항구
(v) 도착 항구
(vi) 선장, 선원 및 승객들의 성명
(vii) 화물의 종류 및 수량

(다) 각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은 자기측의 군사정전위원회 인원과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요원 및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에 의한 수하, 수색 및 심문에 응해야 한다.

(라) 각 함선, 선박 및 주정은 항상 자국기, 군대기 또는 선기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게양 한다.

(마) 민간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의해 인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사장비도 탑재하지 못한다.

(바) 일방의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은 상대방이 통제하는 수역이나 해안에 접근하지 못하며, 상대방의 한강하구 지역의 경계선 100미터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사) 일방의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가된 항해신호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함선, 선박 또는 주정과의 접촉이나 교신을 하지 못한다.

(아) 일방의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은 화물, 장비 또는 승객을 상대방의 함선, 선박 또는 주정에 옮기거나 교환하지 못한다.

(자)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은 야간에는 항해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며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 까지의 기간중에는 자기측 해안 부근에 정박시켜야 한다.

(6) 일방의 인원은 상대방이 통제하는 수역이나 해안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7) 일방의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가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인원, 함선, 선박, 또는 주정과의 접촉이나 통신을 하지 못한다.

(8) 한강 하구내에서 항해하는 함선, 선박, 또는 주정이 폭풍우, 조류의 영향 및 기타 재해로 인해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쌍방은 선박 및 인원의 소속에 관계없이 구조 작업에 나갈 책임이 있다. 구조후의 처리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의 책임 소관이다.

(9) 한강 하구내에서 어느 일방만의 함선과 인원이 관련된 충돌 사건은 자기측의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충돌 사건이 상대방의 함선 및 인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동감시소조가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감시소조에 의해 합의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26.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경고.**

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모든 유엔사측 초소, 남방한계선 일대의 관측소/초소 및 한강하구의 남쪽 제방 일대에 위치한 관측소들은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항공기들이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를 우발적으로 월경 비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대공 감시 초소를 유지한다. 각 초소에는 아래의 경고 신호용 기구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한다.

(1) 적색 및/또는 백색 오성 신호탄 (오성 신호탄)과 적색 및/또는 백색 낙하 조명탄 (최소한 3발).

(2) 적색 지상 연막탄 (최소한 3발).

(3) 5.56 미리 예광탄 (1개 탄창에 최소한 15발).

나. 대공 초소 근무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볼때 항공기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상공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이 경고용 장비를 사용토록 이들에게 지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적색/백색 오성 신호탄 및 적색/백색 낙하 조명탄을 먼저 발사하고 뒤이어 적색 지상 연막탄을 사용한다. 이같은 신호탄들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과 평행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항공기가 북한 영토로 월경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에는 절대 발사하지 않는다.**

다. 공증 조명신호탄 및 지상 연막탄이 비행중인 항공기 승무원에게 관측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내에 있는 또는 그 부근에 있는 관측소/초소 근무자는, 항공기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것을 조종사에 대해 추가 경고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남방한계선과 평행으로 5.56 미리 예광탄을 발사 한다. **항공기에는 절대 발사하지 않는다.** 항공기가 예광탄 발사에 반응을 보일 시는 경고 사격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만일 항공기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군사분계선을 월경하여 계속 비행시에도 그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항공기가 북한의 영토로 넘어가고 있는 것같이 보일 경우라도 항공기에는 결코 발사해서는 안된다.

라. 상기 나 항과 다 항에 포함된 지시 사항들은 각 지피/오피에 잘 보이도록 게시한다.

## 제 4 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27. 총칙.**

가. 식별표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항상 적절한 출입증을 소지하고 해당 식별 표시를 해야 한다. (참조 제 6절).

나. 친교. 공식적으로 허가된 접촉(예: 회담, 전화통화 ,팩스교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중측 인원과의 대화가 금지되어 있다.

**28. 배경.**

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정위 본부구역)의 목적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및 회의 지역을 설정하고 공동경비구역 (JSA) 회의장 지역에 안전한 출입을 제공하는데 있다. 군정위 본부구역은 판문점 부근의 군사분계선을 양쪽으로 가르는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군정위 본부 구역은 군사분계선 양쪽에 " 갑" 구와 " 을" 구로 분할 되어 있다. 공동경비구역은 " 갑"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경 약 800 미터의 대략적인 원형으로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은 콘크리트 선이나 말뚝으로 명확히 표시된 군사분계선으로 분할되어 있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숙영지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유엔사측 " 갑" 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 체코/폴란드 대표단 숙영지는 조중측 구역인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 을" 구내에 위치했었다 (도표 4-1)

나. 사무실 건물들은 정전협정 및 동협정 서명 후에 이루어진 제반 합의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독 위원회가 사용하도록 쌍방에 의해서 공동경비구역내에 건축되어 있다 (도표 4-2 참조).

다. 군정위 유엔사측은 공동경비구역 유엔사측 부분 내에 헬기 착륙장 (H-128) 1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이 헬기 착륙장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 인원들을 회의장 구역에 또는 회의장 구역으로부터 수송하거나 긴급 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 인원들이 관리 유지한다. H-128 헬기 착륙장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 거).

라. 공동경비구역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의 " 갑" 구에 대한 경비 책임은 군사분계선에서 조선인민군 경비대와 유엔군측 경비대간에 분할 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유엔군측 " 을" 구내에서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군 사령관에 대한 경비 및 보좌 책임은 연합사 사령관에게 부여 되어 있다.

(1) 군정위 본부구역의 경비를 제공하는 인원은 쌍방 공히 무장을 한 장교 10명과 무장을 한 사병 90명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는 쌍방으로부터 상기한 장교 10명과 사병 90명 중의 일부에 의해 제공된다. 단 어느때를 막론하고 어느 일방의 공동경비구역의 무장 경비 인원의 총 인원수가 무장을 한 장교 5명과 무장을 한 사병 30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경비 인원이 휴대하는 무기는 각 개인당 비자동소총 1정 또는 비자동 권총 1정으로 제한한다.

마. 예외없이 군사인원, 기자들 그리고 각방의 경비인원들은 유엔군 사령관 또는 다른 해당 관리기관 또는 군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들과 어느 일방만이 전용으로 사용토록 지정된 건물들 내부에서는 군사분계선 월선이 허가되어 있다. 유엔군측 경비 인원들은 군사분계선을 월선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유엔군측 방문객들에게 적절한 경비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군측이 후원하는 방문객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 인민군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어느 일방의 차량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동경비구역내에서 군사분계선을 월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바. 공동경비구역 유엔사측 부분 외곽은 두줄로 된 철조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영문과 한글로 " 공동경비구역" 이라고 쓴 황색 삼각형 표지가 철조망 상단부에 부착 되어있다.

사. 조중측은 군사분계선 북쪽 공동경비구역 경계선이 철조망으로 표시 되었다고 유엔사측에 통고한바 있다.

아. 극히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로 한국 정전 이전에 군정위 본부 구역내에서 원래 거주하였거나 농사를 지은 대한민국 민간인들만이 이 지역에 있도록 허가 된다. 그러나 여하한 민간인도 공동경비구역내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29. 책임.**

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장은:

(1) 유엔사측 공동경비대를 지휘 감독한다.

(2) 군정위 본부구역의 유엔사측 " 갑" 구 및 대성동 영농 지역을 포함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작전 지역에 경비를 제공하고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유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3) 대성동 지역의 민사.경계에 대한 방침들을 이행한다.

(4) 교전 규칙에 따라 군정위의 모든 성원들과, 군정위 유엔사측의 공식 방문객들 그리고 공동경비구역내의 중립국 감독 위원회 인원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고, 군정위 본부구역 유엔사측 " 갑" 구내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한다.

(5) 비상시 유엔사 군정위 인원들,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위원들 및 대성동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계획을 작성, 발표한다.

(6) 군정위 유엔사측 인원들, 중립국 감독 위원회 인원들 그리고 군정위가 공동경비구역과 군정위 본부구역 " 갑" 구내의 출입이 허가한 인원들에게 이동의 편의와 보호를 책임진다.

(7) 조종사들이 H-128까지 비행하기 위한 지상 숙지 및 비행 자격 훈련을 실시하도록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를 보좌한다.

(8) 정전협정 및 추후합의서의 제반규정에 따라 군정위 본부 구역 유엔사측 부분내에서 유엔사 군정위 및 유엔사 군정위 예하기구들에 대한 군수지원 및 전반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9) 군정위 본부구역의 유엔사측 " 을" 구에 대한 출입을 한국군 제 1 사단과 공동으로 조정하고 군정위 본부구역의 유엔사측 " 갑" 구에 대한 출입을 단독으로 조정한다.

(10) 군정위 본부구역 유엔사측 " 갑" 구 및 " 을" 구와 이에 인접한 지역내에서의 모든 정전협정 위반사건들을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및 서울 지휘소에 즉각 보고 한다 (제 7절 참조).

(11) 공동경비구역의 유엔사측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방문객들이 조중측 인원들 (군인 혹은 민간인)과 어떠한 형태로도 교제하거나 담화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12) 화기 사용의 경우는 현재 사용중인 참조 " 아" 및 " 자" 의 통제를 받는다.

나. 구성군 사령관은:

(1)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들을 제외한 군정위 본부구역 유엔사측 " 을" 구역에 경비를 제공하고 "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 (유지 및 통제)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2) 대성동 영농지역에 대한 경비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

## 제 5 절 군사정전위원회 및 관련 기구들에 대한 원조 및 지원

**30. 책임.** 구성군과 지정된 지휘관 그리고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유엔사군정위 및 유엔사군정위 관련 기구들에 경계를 제공하고,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며,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하고 전적으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31. 총칙.**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 지휘관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 위원회 및 기타 지원기구들이 그들의 직능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전적인 보호와 가능한 모든 원조 및 협조를 제공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 위원회 및 기타 지원기구들에 필요한 통신 시설과 수송 수단을 포함한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

다. 군사정전위원회와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기구의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출입과 이 지대 내에서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완전히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비무장지대내의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방의 군사 통제하의 지역 내에 있는 어떠한 지역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32 이동과 경비.**

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인원들에게는 비무장지대 남쪽 부분내의 출입 및 이 지대 내에서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가 허용된다. 유엔사 군정위 인원들이 비무장지대 남쪽 부분내에 있는 동안, 필요에 따라, 경호를 제공한다.

나.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비무장지대 유엔군측 부분에서의 공동감시소조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조중측 인원들을 포함한 공동감시소조 인원들에게 경호를 제공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와 같은 회의가 진행중일때 유엔군측 및 조중측 성원들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안전소로를 통해 한 조사 지점으로부터 또 다른 조사 지점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공동감시소조 조원들이 비무장지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할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만일 공동감시소조 조중측 조원들이 대한민국 측에 있는 비무장지대 밖으로 나와야 할 때에는 이를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위원과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엔군 사령관은 공동감시소조 조중측 인원들이 비무장지대 밖으로 나오는 것과 다시 들어가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일단 승인을 얻으면, 유엔군측 민정경찰은 조중측 공동감시소조 조원들이 포함된 공동감시소조가 그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도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경호를 제공한다.

다.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내에 있는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인원및 방문객 그리고 중립국 감독 위원회 인원들에 대한 안전 보장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유엔군측 " 갑" 구 내에 있는 시설물 및
대성동 마을에 대한 경비 임무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책임이며 그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의 제반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엔사측 경비대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하달한다.

라. 유엔사/연합사 사령관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비상시에 유엔사 군정위 인원, 대성동 주민, 중립국 감독 위원회 스위스, 스웨덴 요원, 방문객 그리고 그들의 장비를 군정위 본부구역에서 보호 또는 후송하기 위한 우발 계획을 작성한다.

**33. 중립국 감독 위원회 스위스/스웨덴 인원들의 경호 및 경계.**

가. 중립국 감독 위원회 스위스/스웨덴 인원들은 그들의 캠프로부터 남방한계선 까지의 직통 통로 상에서는 무제한의 이동이 허용된다. 군정위 본부구역 내의 기타 지역 또는 비무장지대 남쪽의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의 이동은, 합당한 경우, 경호가 제공된다. 중감위 스위스 스웨덴 위원들은 그들의 공무 수행을 위한 이동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들이 사적인 용무 수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여행이 허가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비서장은 스위스 혹은 스웨덴 수석위원의 특별 요청에 따라 경호 및/경비인원에 대한 소요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과 협조한다. 경호 및/또는 경비지원 요청은 통상적으로 스위스 및 스웨덴 수석위원이 서면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수석위원이 부재시, 또는 비상시에는, 양 대표단의 어느 위원이라도 그러한 요청을 발의할 수 있다.

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를 위한 경호 및 경비인원들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제공한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수석대표는 특별한 상황 또는 긴급시에 구성군 부대장 및 지정된 지휘관들에게 그같은 인원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경호 경비 인원들은 통상 군복을 착용한 사병이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무장을 할 수 있다.

**34. 행정 및 군수 지원.**

가. 미 8군 사령관은 대한민국과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기관 및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스위스 및 스웨덴 위원들에게 주거 관리, 수송 및 통신들과 제반 시설을 포함한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

나. 그러한 지원은 1990년 4월 23일자 유엔사 각서, 제목: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의 통제와 지원, 그리고 1983년 10월 19일자 제 8 인사행정 사령부 (잠정) 서한, 제목: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지원단의 인사 및 행정 지원에 따라 군정위 본부 구역에 제공되며 다음 사항들이 이에 포함된다 (참조 너):

(1) 공동경비구역내의 군정위 유엔사측 건물, 통신 및 기타 지정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2) 군정위 본부구역 부근에 있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캠프의 운영 및 유지.

(3) 군정위 본부구역 유엔군측 " 갑" 구 내의 스위스 및 스웨덴 캠프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다.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활동을 위한 행정 및 군수 지원이 예정되거나 필요한 경우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유엔사측 성원 (30명에 대한 사무실 공간, 숙소, 취사장, 정비, 의무지원 과 통신 시설)을 위한 야전 기지의 설치 및 운용이 포함된다. 통신 지원에는 유엔사측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과 수행하는 보도 기관인원들이 베이스 캠프 및 비무장지대내의 공동감시소조 회동 위치로부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연락할 수 있는 직통 통신 회로의 설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은 미 8군 사령관 에 의하여 제공된다.

**35. 원조 및 협조.**

가. 구성군 부대 및 지정된 지휘관들은 모든 기구 및 부대가 임무와 책임을 수행중인 군정위 유엔사측 요원과 중감위의 스위스 및 스웨덴 요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와 협조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부대및/혹은 구성군 부대장들 및 지정된 지휘관들의 기타 예하 기구 및 부대에 대해 직접 협조와 지원을 의뢰할 필요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원조나 지원은 제공되어야 하며 전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위원들과 그들의 참모 인원들에게는 주한 외교관들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특전, 대우 및 면제가 항시 부여된다.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 피. 엑스 및 카미서리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들과 영내 매점의 이용이 허가되어 있다. 스위스/스웨덴 인원들을 수송하는데 미군 차량이 사용될 경우라도 스위스/스웨덴 인원이 탑승했거나 그들의 국기를 달았거나 또는 중감위의 표시인
4 색기를 달았을 경우에는 이를 외교관 차량으로 간주한다.

## 제 6절.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필요한 식별표지

**36. 신분증과 출입증.** 비무장지대 유엔군측 부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4가지의 신분증과 2가지의 출입증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신분증과 출입증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신분증을 제외하고, 일련번호로 통제되는 2 1/2" x 3 1/2" 인치 크기의 양식으로 되어있음. 하기 인원들에게만 비무장지대 유엔군측 부분을 출입하는데 필요한 신분증이나/또는 출입증의 발급이 허용됨. 각 신분증과 출입증의 발행처도 아래에 열거되어 있음.

가. 군사정전위원회 신분증(유엔사 양식 9EK).

(1) 발행처: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2) 발급대상: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위원,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소속된 참모 보조인원, 유엔사군정위 연락장교단, 군정위본부구역 유엔사측 부분에서 비행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헬리콥터 승무원.

(3) 필요한 자료/서명: 이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에 서명을 하고 사진을 붙인 다음 ,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행정장교 또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발행기간: 인가된 인원이 신분증/출입증에 기록된 직위에 보직된 기간동안 발급된다. 유효기간 만료일자는 신분증 전면 상단여백에 영어로 그리고 이면 상단여백에 한글로 기입한다.

(5) 회수: 군정위 신분증은 유효기간 만료시,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행정장교 또는 유엔사군정위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나. 중립국감독위원회 신분증(유엔사 양식 4).

(1) 발행처: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이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단에 신분증 양식을 일괄적으로 배부하면 각 대표단은 이를 각 개인에게 발급한다. (체코와 폴랜드 중감위 신분증은 군사정전위원회 조중측이
발급한다. 이 신분증은 스위스/스웨덴의 신분증과 외견상 비슷하며 동일한 내용과 서명을 요구하고 있음).

(2) 발급대상: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대표단의 위원, 가족및 참모 보조인원들에게 발급함.

(3) 필요한 자료 및 서명: 신분증에는 각 대표단의 위원이 서명하고 사진을 부착한다. 이에 부가해서, 신분증의 이면(중앙 부분)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비서장이 서명한다.

(4) 발행기간: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단 인원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재임기간 동안 발급한다. 신분증 기간 만료일자는 전면 중앙상단의 여백에 영어로, 전면 좌측에 중국어로 그리고 전면 우측에 한글로 기입한다.

(5) 회수: 중립국감독위원회 신분증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일에 발행한 대표단에 반납한다.

다. 대성동 신분증(유엔사 양식 7EK).

(1) 발행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2) 발급대상: 대성동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민간인) (주, 이 신분증에는 전면에 " 대성동에 한함" 이라고 도장을 찍음).

(3) 필요 자료 및 서명: 이 신분증에는 피발급자 각 개인이 서명을 하고 그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서명해야 한다.

(4) 발행 기간: 1년 유효기간 신분증.

(5) 회수: 대성동 신분증은 주민이 대성동 마을에서 다른곳으로 이주시 회수되며 무효화된다.

라. 보도인원 신분증(유엔사 양식 52).

(1) 발행처: 유엔사 공보장교

(2) 발급대상: 유엔사/연합사 및/또는 주한미군/미8군 공보처에 소속된 보도기관 대표와 군사정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예를들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 군정위 비서장 회의, 경비장교 회의; 공동경비구역의 귀빈 방문등)을 취재하는 모든 유엔사 후원 보도기관 대표(시민권, 국적, 및 직업 또는 외교관 신분 및 관계기관 여부와 관계없음).

(3) 필요 자료 및 서명: 이 신분증은 피발급자와 발급장교가 서명을 해야 한다.

(4) 발행기간:

(가)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이나 미8군 공보처의 신분증 소지자가 해당 직책에 재 임기간동안 발급된다. 유효 만기일자를 신분증 전면 상단 여백에 영어로, 그리고 이면 상단여백에 한글로 타자한다.

(나) 유엔사 후원 보도기관 대표들에게는 발행일로 부터 최고 1년 까지의 기간으로 발급함. 만기일자는 신분증 전면 상단여백에 영어로, 이면 상단여백에 한글로 타자한다.

(5) 회수: 보도인원 신분증은 신분증 유효일시에 유엔사 공보처에 반납한다.

마. 비무장지대 영구 출입증(유엔사 양식 10 EK) 및 비무장지대 임시 출입증(유엔사 양식 11 EK).

(1) 발행처: 유엔사군정위 비서장. (주: 이러한 증명서의 발급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있음. 대한민국 제 1군, 제 3군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는 통상적으로 일괄 배부함).

(2) 발급대상:

(가) 비무장지대 영구 출입증: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소속된 인원.

(나) 비무장지대 임시 출입증: 땅굴 탐사반 (TNT) 소속인원, 유엔사 군정위 활동을 임시 지원하는 임무에 보직된 인원. 그리고 비무장지대 임시출입이 허용된 기타 인원.

(3) 필요자료 및 서명: 이 증명서는 피발급자 및 발행장교가 서명해야 한다.

(4) 발행기간:

(가) 비무장지대 영구 출입증은 각 개인의 보직기간동안만 발급된다.

(나) 비무장지대 임시 출입증은 발행일로 부터 최장 60일 까지의 기간으로 발급한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인가된 출입 지점을 해당란에 기입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유엔사 통제부분의 여러 지점 출입은 허가되지 않는다.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서는 발행장교에 의한 예외가 허용된다. 출입구는 동일한 지점이 되지 않아도 된다.

(5) 회수: 비무장지대 출입증이 만기가 되었거나 적법한 유엔사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가 없을때는, 즉각 발행처에 반납해야 한다. 발행처는 임의로 출입증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37. 완장.**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있을때는 식별을 위하여 그림 6-1, 6-2, 및 6-3에 따라 완장을 착용한다. 조중측이 착용할 완장에 대한 설명은 제 7절에 기술되어 있다. 완장은 오른팔에 착용하는 해군사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원은 왼팔에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완장의 폭은 4인치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황색: (5명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위원을 제외한) 모든 군정위 신분증 소지자와 유엔사군정위를 지원하는 인원들은 황색완장을 착용한다.

나. 청색: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을 제외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내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련된 정비, 건설, 및 기타 작업인원들은 청색완장을 착용한다. 유엔사측 보도인원들도 청색완장을 착용하지만 완장에 " PRESS" 와 " 기자" 라는 글자가 영어와 한글로 표기되어야 한다.

다. 헌병완장: 유엔사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및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경비인원들은 검은바탕에 한글 및 영어의 백색글자로 된 헌병완장을 착용한다. 미군은 " MP" 라는 글자를 " 헌병" 이라는 글자위에 쓰고, 한국군은 " 헌병" 이라는 글자를 " MP" 위에 쓴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38. 기타 식별 양식.**

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금속뱃지. " JSA 뱃지" 는 윗쪽에는 흑색의 " JSA" 라는 글자와 밑에는 흑색의 작은 숫자와 함께 유엔상징이 담겨져 있는 다이아몬드형의 소형(약 1.5 인치 X 1.5 인치) 뱃지로 되어있다. 이 뱃지는 군정위 본부구역의 유엔사측 지역내에서 건설, 보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경비 및 기타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에게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발급한다. 이 뱃지는 주머니 양쪽 단추에 고정해서 우측 앞가슴 주머니에 부착한다.

나. 공동경비구역과 군정위 본부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모든 방문객은 군정위 본부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발급한 방문객 뱃지를 달아야 한다.

**39. 차량.** 군정위 본부구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전역에 출입하는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가로, 세로 약 20 인치 크기의 기를 차량앞쪽 깃대에 부착해야 한다. 적합한 깃발은 다음 5가지 종류가 있다:

가. 스위스 및 스웨덴 국기. 중감위 스위스 및 스웨덴 대표위원과 참모인원을 태운 차량.

나. 중감위 4색 깃발. 중감위 스위스/스웨덴 및/또는 체코/폴랜드 대표위원과 참모 보조인원들을 태운 차량.

다. 청색기. 유엔사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인원, 방문객 및 건설, 보수, 또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련된 인원들을 수송하는 차량. 보도기관 전용 차량도 " PRESS" 및 " 기자" 라고 쓰인 청색기로 표시한다. 그러나, 보도기관 대표들은 황색기로 표시된 차량으로도 수송될 수 있다.

라. 황색기. 군사정전위원회 신분증 소지자들을 수송하는 차량.

**40. 항공기 표지.**

가. 유엔사군정위와 그 부속기구들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기 및 비무장지대 지역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의무후송기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내에서 비행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한다:

(1) 고정익 항공기. 동체와 각 날개 둘레에 3개의 황색띠를 페인트로 칠한다. 비행중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띠의 폭은(통상 2 피트) 항공기의 크기에 어울리도록 한다.

(2) 회전익 항공기. 조종실과 후미 둘레에 3개의 황색띠(약 12 인치의 폭)를 칠한다.

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부속기구들에 속한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긴급의무후송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항공기도 비무장지대/한강하구내로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41. 한강 하구 선박 식별표지.**

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부속기구에 소속된 인원들을 수송하는 모든 경비정은 좌,우현의 선수와 선미에 3개의 황색 수직선으로 표시한다. 이 줄의 크기는 선박의 크기에 비례하며, 통상 길이는 6/10 미터, 폭은 1/10 미터(2피트 X 4인치)이다. 또한, 유엔사군정위 인원을 수송하는 경비정은 가로, 세로 약 1미터의 황색 깃발을 부착한다.

나. 한강하구 순찰임무를 부여받은 한강하구 민정경찰의 경비정은 가로. 세로 약 1 미터의 청색깃발로 표시한다.

**42. 조중측 식별표지:** 조중측은 그들의 인원들이 비무장지대/한강하구, 군정위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에 있는동안 다음과 같은 식별표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유엔사측에 명시했음.

가. 군사정전위원회 조중측 성원들은 군정위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의 모든 지역에서 황색완장을 착용하고, 차량에는 황색기를 달아야 한다.

나. (무장한) 조중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은 약 32cm X 14cm 크기의 적색완장을 좌측팔에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완장에는 한글로 " 경무" 라는 표시를 해야한다.

다. 조중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의 차량은 차량 앞부분 부근에 적색깃발을 부착한다.

라. 공동경비구역내와 군정위 본부구역의 조중측 부분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는 조중측 공동경비대 성원들은 한글로 " 경무" 라고 쓴 적색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차량은 적색깃발을 달아야 한다.

마. 조중측 보도인원들은 백색 원내에 영어로 "P" 라는 글자와 한글로 " 보도" 라는 글자가 백색원의 양쪽으로 나뉘어 표기된 녹색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보도인원들은 적색 혹은 녹색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송될 수도 있다.

바. 비무장지대내에 있는 조중측의 건설 및 유지작업 인원들은 적색의 4각형 천조각이나 적색완장을 좌측팔이나 우측팔에 착용한다. 건설 및 유지작업 차량에는 적색기를 달아야 한다.

사. 비무장지대에 들어오는 조중측의 방문객들은 명확한 식별표지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쌍방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문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비인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대한민국 국민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

가.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한국인은 비무장지대에 출입을 허가하는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발급받기 전에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원조회필을 받으려면 각 해당자에 대한 한국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찰의 신원조회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된 증서를 제시할때에 한해 책임부대/부서는 적절한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한다.

나. 절차. 한국 경찰의 신원조회를 신청하는 책임은 해당 한국인과 그의 보직 또는 고용부대/기관/근무부서에 있다. 신원조회는 해당인의 지역 경찰서에 의뢰하고 경찰 소정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국경찰의 신원조회가 일단 완료되면, 각 개인의 부대/기관/근무부서는 조사결과 사본을 요청하여 받을수 있다. 신원조회 결과가 적격인 경우 책임부대/기관/근무부서는 적절한 신분증/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 7 절 정전협정 위반사건의 보고 및 조사

**44. 총칙.** 본 규정의 목적은 정전협정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분명한 협정 정신과 각 규정에 관한 의도에 위배되는 행위를 어느 일방이 자행하는 행위를 정전위반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전협정과 추후 합의 사항의 모든 조항 및 규정의 위반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한반도에 인접한 수역 이나 한반도의 상공등 어느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45. 주요 위반행위.** 주요 위반행위들에는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하는 행위, 한강하구내로 침투하는 행위, 인원, 물질이 상대방의 육지내고 침투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육지에 인접한 수역, 동 수역의 상공, 비무장지대 전역과 한강하구 및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공을 침투하는 행위도 주요 위반행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방의 무장 인원이 군사분계선 또는 한강 하구를 넘어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나. 군사분계선/한강하구 너머로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대방 인원, 경비정 또는 항공기에 사격하는 행위.

다. 일방의 항공기가 상대방의 상공 또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지역 상공의 어느 부분을 침투 하는 행위.

라. 일방의 무장 선박이 상대방의 한국 육지에 인접한 수역에 침투하는 행위.

마. 상대측 특정항 또는 해안지역으로의 진입 또는 진출을 방해하려는 일방에 의한 해군 봉쇄 행위.

바. 조중측과 유엔사측 인원, 선박 또는 항공기 사이의 교전이나 기타 전투 행위.

사.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방대한 요새진지 또는 지뢰지대의 건설 또는 주요개축.

아. 탱크, 장갑차 및 야포와 같은 주요 군 장비들을 비무장지대내로 반입하는 행위.

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무기를 발사하거나 권총을 뽑아들거나 공격 (싸움)을 하는 행위.

**46. 사소한 위반.** 사소한 위반 행위는 정전협정에 대한 부주의 또는 불성실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실탄이 군사분계선 넘어 상대측의 육지에 탄착하지 않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사격 행위.

나. 기관총, 박격포, 또는 무반동총 (야포 제외) 과 같은 공용화기를 비무장지대내로 반입하는 행위.

다. 비무장지대 내에 자동화기 및 로케트 발사기와 같은 개인 화기를 들여오는 행위.

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사격을 위한 사계청소 및 위장 등을 포함한 소규모 요새진지, 철조망 또는 참호의 구축 또는 개축.

마. 조명탄 또는 탐조등으로 아군을 괴롭히는 행위.

바. 의복에 적절한 완장 또는 식별표식을 하지 않거나 차량에 깃발을 달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식별표시 위반행위.

사. 허가되지 않은 비무장지대 출입행위.

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키는 행위.

자. 일방의 경비인원 및/또는 허가된 방문객에 대한 상대방에 의한 욕설, 모독 또는 괴롭히는 행위.

**47. 조중측의 위반행위.**

가. 조중측은 1953년 이래 방대한 양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하여 유엔사 측을 비난해 왔다. 이러한 비난들의 대부분이 사소한 위반행위이지만 그들은 이 통계 숫자를 유엔사측이 불성실하고 정전협정의 규정들을 준수하는데 소홀하다고 주장하는데 아직도 이용하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관측된 조중측의 모든 위반 사항들을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1) 이 조치는 조중측의 위반행위 보다 유엔군 측의 위반행위가 더 많다는 통계적인 증거에 근거한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킨다.

(2) 이 조치는 유엔군이 정전협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중측도 그와 같이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 조중측의 가장 일반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1) 비무장지대 내에서 인원과 차량에 부적절한 표지 사용. 조중측이 착용해야 될 식별 표지는 도표 6-3 참조.

(2) 비무장지대 내에 자동화기/공용화기 반입. 관측된 공용화기 (박격포, 무반동총, 기관총)는 통상적으로 즉시 보고한다. 개인 자동화기 휴대는 일상적인 계통을 통해 보고한다.

(3)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훈련 연습 실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분대 전술, 진지 점령 또는 돌격기동은 도발적인 행동이며 정전협정의 위반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조중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이 그들의 철책을 순찰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같은 순찰은 위반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의 목적인 " 일종의 법 집행 활동 또는 민간 구조 및 행정적인 활동"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8. 보고.**

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비서처의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조중측 또는 유엔사측의 모든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즉시 지휘계통을 통해 유엔사/연합사 서울 지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 지휘소 일직 장교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즉시 연락을 해주어야 한다.

나. 위반행위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측자의 계급 및 성명.

(2) 소속.

(3) 사건 관측 장소

(4) 최초, 중간 및 최종 관측일시

(5) 가장 가까운 군사분계선 표지물로부터의 좌표, 거리 및 방향이 포함된 최초, 중간 및 최종 관측된 위치. 만약 위치가 해상이거나 공중인 경우에는 모든 주요 사건의 알려진 좌표를 보고한다.

(6) 고도 (항공기에 한함)

(7) 탐지 방법

(8) 적으로부터 받은 사격 (실탄의 수, 구경, 사격을 받은 장소)

(9) 주요 표지물 (부대 마크, 숫자 등)

(10) 기상 상태

(11) 군사분계선을 넘었는가 또는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12) 인원, 차량 또는 항공기가 적절한 표지 (완장, 깃발 등)를 했는지의 여부

(13) 휴대 무기의 종류

(14) 진행중인 조사 상황

다. 기타 모든 경미한 위반행위는 참조 마의 부록 Y에 따라 보고한다.

**49. 조사.** 정전협정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진행하는 책임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모든 조사의 결과는 유엔군 사령관 (참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게 보고한다.

가. 총칙.

(1) 군정위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전협정의 모든 위반사항들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군정위가 사용할 수 있는 두 기관은 아래와 같다.

(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내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사항들을 조사하도록 인가된 공동감시소조. (제50항 참조)

(나)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밖의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사항들에 대해 특별 감시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중감위에 요청할 수 있다. 군정위 또는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 지시에 따라 두 기관 중 하나가 파견될 수 있다.

(2) 유엔사 부참모장은 보고된 어느 일방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단독으로 특별조사반을 파견할 수 있다. (51항 참조)

나. 조사 책임

(1)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은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서북도서 및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한 모든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사 부 참모장의 지시를 받는다.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은 정전협정 위반행위 조사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

(가)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의 작전지역을 제외하고, 비무장지대/한강하구의 지리적 경계선 내에서 어느 일방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조사는 이러한 지역에 출입이 인가된 인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나)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8군 사령관이 미 육군 항공기에 대해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에 의한 민간 및 군용항공기의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민간 항공기에 대한 이러한 책임은 대한민국 건설 교통부와 협조한다.

(다) 해군구성군 사령관은 항공기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일방에 의한 해상에서의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라) 미8군 사령관은 그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미 육군 항공기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마)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은 그의 책임지역 내에서 어느 일방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2) 유엔사 부참모장은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구성군 사령관들에게 정전 위반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한다.

**50. 공동감시소조 조사**

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기구는 공동감시소조이다. 정전협정은 5개의 공동감시소조를 설치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공동감시소조의 책임지역은 도표 7-1에 표시되어 있다. 각 공동감시소조는 최소 4명, 최대 6명을 넘지 않는 영관급 장교로 구성되며, 반은 유엔군 사령관이 나머지 반은 조중측 최고 사령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추가로 양측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30명을 넘지 않는 참모보조요원들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폭발물 처리 전문가, 측지요원, 사진병, 운전병 등, 공동감시소조의 운용에 필요한 기술요원들은 총 30명의 참모보조요원 안에 포함된다. 쌍방의 공동감시소조 선임자가 각 측의 대변인이 된다. 현재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위치한 유엔사측 공동감시소조만 상설되어 있다.

나. 공동감시소조의 운용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 사령부를 제외하고는 공동감시소조를 상근 상태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작전장교가 그의 주요 임무의 하나로서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책임장교로 보직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유엔사 군정위 공동감시소조에 보직된 기타 장교들은 한국군 연락단 작전장교와 유엔사 연락단의 당직장교이다.

다. 공동감시소조의 유엔사측 요원은 유엔사 부참모장의 지시에 따라 파견된다. 만약 조중측이 유엔사 부참모장이 요구한 사건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유엔사 부참모장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공동감시소조의 유엔사측 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감시소조의 유엔사측 요원을 특별조사반 (SIT) 이라고 호칭한다.(51항 참조)

라.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및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정전협정 위반사항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동감시소조가 수행하는 추가적인 임무로는 유해 회수 및 교환, 억류인원의 교환 그리고 유엔사와 조중측 쌍방의 합의가 요구되는 기타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 관련된 업무 등이 포함된다. .

마. 유엔사 군정위가 조중측과의 협상에서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또는 조중측 인원에 의해 실제로 행해진, 또는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 임명

(1) 공동조사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공동감시소조 요원들을 상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요원들은 필요시 야전부대나 기관들로부터 임명되게 된다. 이들에게는 주임무가 있으나 " 필요시" 또는 " 요청시" 에는 유엔사 군정위의 임무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2) 공동감시소조 요원들은 영관급 장교들이 임명된다. 유엔사 군정위 수석위원이 공동감시소조에 보직되는 각 요원에게 군정위 신임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성명, 계급, 국적 및 군별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참조: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장) 앞으로 송부한다. 각 급 부대에서는 이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 절차

(1) 공동감시소조는 주요 위반사항의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군사분계선의 유엔사측의 증거를 보존하거나 군사분계선 북측의 증거를 관측 또는 증거훼손을 관측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적절한 장소에 비무장지대 민정경찰을 경비병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전술부대 지위관은 군사분계선의 유엔사측에 위치한 어떠한 증거(시체,장비 및 물자)라도 우군 또는 적군에 의해 이동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경비를 제공한다. 모든 증거물은 유엔사 군정위 공동감시소조, 또는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에 의해 조사토록 임명된 다른 공동감시소조중의 한 조가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은 채 현장에 보존되어야 한다.

(2) 공동감시소조는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카메라를 지참하는 것이 허용된다.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사진 촬영 시, 만약 조중측 인원들이 반대하거나 촬영을 방해하면 모든 사진 촬영 시도를 즉시 중단한다.

**51. 특별 조사**

가. 때로는 유엔사 부참모장의 당면한 요구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가 있다. 특별조사의 목적은 공동감시소조 투입 전, 군정위 본회의 또는 비서장 회의 전에 어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러한 조사들은 주요 사건 또는 정전협정 위반사항들에 관한 유엔사의 입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나. 특별조사반은 사건의 현장 또는 정전위반행위등 체포된 개인 또는 집단에 구금된 장소에 사건발생 즉시 또는 48시간내에 가능하며 헬기로 즉시 파견되어야 한다. 특별조사반은 필요시 유엔사 또는 해당지역 부대의 지원을 요구한다.

다. 통상적으로 일방적인 특별조사반은 정전협정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같이, 그리고 제 50항 가에 임명된 바와 같이 유엔사 공동감시소조에 보직된 동일요원으로 구성된다.

라. 조사가 필요한 군정위 본부구역에서의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요원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마.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은 사건 현장으로 즉시 파견되며, 필요시 해당 지역의 사령부 또는 부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지휘관들은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바. 유엔사 군정위가 적시에 조치하고 조중측과 협상에서 선제권을 갖기위해, 유엔사 또는 조중측 인원들에 의해 실지 또는 발생 가능한 주요 위반 사항의 사실들에 대한 최초 활용은 절대적이다.

사. 군사분계선을 월경하거나 한반도에 근접한 수역으로의 진입을 통해 북에서 남측으로의 탈북이 의심 또는 확인된 경우. 망명을 요청하는 개인의 의도를 결정하기위해 추가적 조사 조치가 요구된 수 있다. 군정위 수석대표 또는 유엔사 부참모장은, 사전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후 또는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한 후 체포된 인원에 대해 필요시 중감위로 하여금 특별 면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면담 목적은 해당 정전 위반사항에 대한 공평한 평가를 실시, 유엔사 특별조사중 획득된 사실을 확인 및 특별조사 경과를 재 확인/확정하는데 있다. 중감위 면담은 사건 발생후 늦어도 7-10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52. 조사 범위**

가. 다음에 수록된 지시사항들은 적절한 해당 규정에서 지시되거나 또는 여타 지침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나. 주요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최초 조사 보고서는 사건 발생 72시간 이내에 지휘계통을 통해 유엔군 사령관 (참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최초 조사 보고서에는 제48항 나에 수록된 내용을 상술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쪽이 화살표로 표시된 사건의 약도
(2)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등이 포함된 사건내용의 설명
(3) 사건지역, 노획된 장비 및 인원의 사진
(4) 위반 사항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증거

다. 필요시 추후 보고서는 지휘계통을 통해 유엔군 사령관 (참조: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게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 사소한 위반사항은 기존의 절차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특별히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하지 않는다.

마. 조중측에 의해 제기된 주요 또는 사소한 위반사항은 유엔사 부참모장이나 유엔사 군정위가 해당 구성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서면보고는 위반사항 발생 72시간 이내에,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유엔군 사령관 (참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조중측에 의해 제기된 위반사항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요약 설명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53 공동감시소조/특별감시반 운영지원.** 연합사 사령관 및 주한 미군 사령관은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에 다음과 같은 세부적 지원을 한다.

가. 특정 조사에 필요한 기술요원 (예, 통신, 폭발물처리, 공병, 의무, 항공통제)을 제공한다.

나. 필요한 숙식을 제공한다.

다. 조중측 인원들에 의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경비를 제공한다.

라. 필요시 헬리콥터 수송을 제공한다.

마. 사건 현장에서 최대한 가용할수 있는 통신을 제공한다.

바. 유해와 증거물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노무 작업반을 제공한다.

**54. 전술적 고려사항.** 통상적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조사활동은 유엔군 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야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감시소조/특별감시반장은 유엔사 조사에 관여된 부대의 전술, 경비, 작전에 필요한 사항에 항시 합당한 배려를 한다.

**55. 증거 보존.**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전술 지휘관은 유엔사 군정위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 대표가 증거품을 해제 또는 후송 미정인 증거 보존의 책임을 진다. 즉각적인 후송이 필요한 부상자나 즉각 파괴해야 할 탄약류를 제외하고 사체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들은 그 원래의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접근을 허용할 때까지, 여타 조사기관의 현장 접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56. 징계 조치.** 정전협정에 규정된 바와같이, 조사 결과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한국군 인원들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구성군 사령관들은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히 유엔군 사령관 (참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 8 절 지피 및 오피 점검

### 57. 배경 및 권한

가. 유엔군측의 유일한 정전협정 서명자로서 (한국군을 포함해서 그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부대를 대리하여),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내의 그 부분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한 유일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 범위에는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모든 수역, 비무장지대 상공과 서해에 위치하고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를 포함한 서북 5개 도서군이 포함된다.

나. 유엔군 사령관에 대한 미 합참 권한 위임사항: "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을 유지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전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한반도와 그 인접 수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모든 미국, 대한민국 및 유엔사 군 병력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할 권한을 갖는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 58. 총칙

가. GP/OP 정의: 조선인민군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침투기도를 방지하며 이곳에 배치된 민정경찰 부대들에 대한 숙소 및 경계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목적을 지닌 비무장지대 내 또는 한강하구를 연해 위치하고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경계초소(GP) 또는 관측소(OP)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된 임무를 매일 시행하는 것 이외에, 비무장지대 유지 및 통제를 포함하여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민정경찰은 중요하다.

나.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초소/관측소에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한국군 제1군, 제3군 및 제2해병사단의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유엔사 통제를 받는 서북도서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소들은 독립 해병부대에 의해 운용되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다. 제3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에서 유엔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 2000미터이며, 한강하구에서는 만조 시 수면과 육지의 접촉선이 한강하구와 각 방 군사통제지역 사이의 경계선이 된다. 비무장지대 내에, 남방한계선 철책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경계초소라고 칭한다.

반대로 남방한계선 철책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들은 비무장지대 내이기는 하지만 관측소라고 칭한다.

라. 경계초소/관측소의 전시 임무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유엔사 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제58항 가 참조) 그러므로 경계초소/관측소는 동일하게 병력이 배치되고 훈련되어야 하며 장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유엔사 군정위가 경계초소/관측소들을 점검할 때에는 동일 기준과 표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마.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적절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비무장지대/한강하구와 제1항 가에서 언급된 5개 도서군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사 관할 경계초소/관측소들을 매주 점검(유엔사 군정위 작전 점검반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다.

**59. 목적.**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및 서북도서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초소/관측소들을 정기 및 일상 점검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려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데 있다. 나아가 이런 점검을 통해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모든 활동 (유엔사와 조선인민군 양 측)을 감독하고, 경계초소/관측소에 배치되어 있는 민정경찰 병력들이 정전협정과 정전교전규칙을 잘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60. 책임**

가. 유엔사 군정위는:

(1) 매주 점검을 시행하도록 유엔사 군정위 조사반을 제공한다.

(2) 시행된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조사를 받은 부대에 결과를 제공한다.

(3) 연합사 지상작전과에 시행 예정인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분기 단위로 조사 결과를 요약 제출한다,

나.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제1군사령관, 제3군사령관, 제2해병사단장은:

(1) 유엔사 군정위 조사반 요원들이 그들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가능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모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사반들이 적시에 출입을 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계초소/관측소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부대들이 정전협정과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를 완전히 숙지하도록 한다.

다. 한국군 연락단 (유엔사 군정위)은:

(1) 유엔사 군정위 조사반의 조사진행을 지원한다.

(2) 조사를 진행하게될 해당 사단 및 부대와 조사일정을 협조한다.

**61. 유엔사 군정위 점검반 인원.** 유엔사 군정위 조사반의 구성은 유엔사 군정위 인원, 유엔사 연락장교 및 조사반과 동행하는 초청 인사의 가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감시소조/특별조사반장이 유엔사 군정위 조사반장을 겸임한다. 가능하면, 유엔사 군정위 조사반은 조사가 진행될 부대에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게될 인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사 군정위 조사반이 예의상 제공하는 것이지 필수요구조건은 아니다. 필요 인원들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는 조사반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 9절 영현 등록 업무

**62. 책임.** 연합사 사령관은 사망한 유엔군측 및 조중측 인원들의 매장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회수 작업에 조력하며 유해의 회수와 처리를 위해 유자격 기술 요원을 제공한다.

**63. 일반사항.** 정전협정은 각방의 사망자의 시체 회수 및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일방에 속한 시체가 상대방 측의 영토에서 발견 되었을 경우 군정위 쌍방 비서장을 통해 시체의 인도와 인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64. 유해 발굴 및 교환.**

가. 비무장지대 남쪽 부분에서 발견된 유해는 유엔사군정위측의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를 발견하면 아래 절차를 따른다:

(1)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2) 적절할 경우, 유엔사 군정위는 유해를 발굴하고 후송하기 위해 영현 등록 인원담당 인원들을 비무장지대로 데리고갈 준비를 한다. 통상적으로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반이 유해를 발굴하고 후송한다.

(3) 유해가 조중측 소속인원의 것으로 추후에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조중측에 인도하기 위한 군정위 비서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유해가 유엔사측 인원의 유해일 경우에는, 영현 등록 담당인원들은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나.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유해는 다음중 한곳의 승인이 없이 훼손되거나 제거되서는 안된다:

(1) 유해가 사망한 조중측 인원의 것으로 믿어질 경우, 상기 64항 가 (1) 및 64항 가 (3)에 기술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유해가 사망한 유엔사측 인원의 것으로 믿어질 경우 제 34 지원단 영현반에 통보해서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하도록 한다.

다. 조중측으로부터 유엔군측 인원의 유해가 북한에서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유엔사 군정위는 그 유해를 돌려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 제 10 절 인원 교체

**65. 책임. 각 구성군 사령관은:**

가.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인가된 출입항을 출발하고 도착하는 교체 및 파견 근무 요원의 수를 유엔군 사령관 (참조: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나. 그들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교체 인원의 수가 매월 아래에 설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통제 조치를 확립한다. 만일 이 할당된 수를 초과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구성군 사령관은 이를 즉시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에게 통보한다.

(1) 미육군 - 22,000

(2) 주한 미공군 - 10,000

(3) 주한 미해군 - 2,000

(4) 주한 미해병 - 200

**66. 총칙.** 정전협정은 각방의 지정된 출입항을 통한 인원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체는 1대 1로 실시하되 어느 일방이든 교체 방침에 따라 1개월 기간에 34,000명을 넘지 않는 군 복무자가 한국에 돌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67. 정의.** 본 규정의 목적상 하기에 기술한 정의를 적용한다.

가. 인원. 이 용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현재의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포함한다.

나. 교체인원. 영구적인 전속 명령으로 한국을 떠나거나 한국에 들어오는 군인.

다. 파견 근무 요원. 영구적인 전속명령 이외의 명령으로 한국을 떠나거나 한국에 들어오는 군인들.

**68. 출입항.** 영구적인 전속 인원들은 군산, 인천-김포 (인천 국제공항 및 오산 공군기지 포함) 공항과 인천과 부산항을 통해서만 도착 및 출발한다. 파견 근무 인원들은 어느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든지 도착 및 출발할 수 있다.

**69. 절차.**

가. 제 633 공항대대장은 목록" Y" 에 의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항공기로 오산 및 군산 비행장을 통해 출입국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고책임을 이행할 영관급 장교 1명을 정전협정 출입항 장교로 임명한다.

나. 주한 미해군 사령관은 인천 및 부산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고책임을 지게될 1명의 영관급 장교를 정전협정 출입항 장교로 임명한다.

다. 구성군사령관 및 지명된 지휘관은 임명된 정전협정 출입항 장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유엔사군정위 비서처에 통보해야 한다. 정전협정 출입항 장교는:

(1)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2) 본 규정이 요구하는 인원보고 및 구성군사령관이 하달한 명령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라. 구성군사령관 및 지명된 지휘관들은 그들의 책임 하에 있는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매일 도착 및 출발하는 군인들에 대한 신속한 보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규정한다. 이 보고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가 유엔사 소속 군인들의 한국 도착 및 출발에 관한 일일 보고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각 정전협정 출입공항 장교는 오산의 정전협정 출입항 장교에게 자료를 유선 보고하며, 그는 이를 종합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 09시 까지 유엔사 군정위 전방비서처인 공동일직사무실에 유선 보고한다. 인천 및 부산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는 정전협정 출입항 장교는 상기요령에 따라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공동일직사무실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유엔사 규정 551-4

토요일 및 일요일과 휴일의 보고는 매주 월요일 또는 그 휴일 다음날 09시 까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유선 보고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는 전날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인원과 파견 인원들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마. 유엔사 군정위 전방 비서처(공동일직사무실)는 일일보고를 종합하여 군정위, 조중측 및 중감위에 제출하기 위해 월간 합계와 정전협정 발효일자 이후의 누계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의 제안자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임.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있을시에는 미육군성 양식 2028 (발간물 및 양식 수정제안)이나 대한민국 육군 양식 1-6-2를 사용하여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참조: 유엔사 군정위-작전과)(Unit#16268, APO AP 96205-0032) 앞으로 송부 바람. https://www-eusa-1.korea.army.mil

사령관 대리:

주무관:

토마스 피. 케인
미공군 준장
부 참모장

# 부록 가

## 관련 근거

가. 1950년 7월 7일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문(48)

나. 정전협정: 제 1권, 협정문본, 제 2권, 지도.

다. 정전협정 서명후에 이루어진 합의, 1976년 10월 1일 수정 (한정 배포, 해당 조문 포함됨).

라. 유엔사/주한미군/미8군 규정 700-11, 주한 및 주일 유엔사 부대 군수지원 및 주한 미합동 군사지원단.

마. 유엔사/연합사 예규.

바. 주한미군/미8군 예규.

사. 유엔사 규정 525-2, 대성동 민사 행정.

아. 유엔사/연합사 규정 525-4, 유엔사/연합사 정전교전 규칙.

자. 2002년 5월 15일자 유엔사 군정위 방침 각서 91-9,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 교전규칙.

차.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사 위임사항, 2b(8)항 및 2b(9)항, 1994년 12월 1일.

카. 유엔사 사령관 위임사항, 1983년 1월 19일.

타. 전략 지시 2호, 1994년 12월 1일.

파. 한국 육군 및 주한미군의 비무장지대 항공표지판 상호 지원에 관한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육군 참모총장 사이의 합의 각서

하. 남방한계선 비행에 관한 유엔사/연합사 예규.

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규정 95-3, 항공: 한국 전술지역 P-518 비행 절차.

너. 한국 육군 제 1사단과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간의 합의각서, 2003년 8월

# 부록 나

## 도표


2-1 대성동 영농지역 지도 (1:50,000) 나-2

3-1 군사분계선 표지물 형태 나-3

3-2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지역나-4

3-3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표지판 나-5

3-4 비무장지대 경고판 나-6

3-5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지판나-7

4-1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마카) 나-8

4-2 공동경비구역,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나-9

6-1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한강하구에서 요구되는 식별표시 나-10

6-2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에서 요구되는 식별표지 나-11

6-3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내의 조중측 인원들에게 요구되는 식별표지 나-12

7-1 공동감시소조 지역 나-13

부록 나

도표 2-1

# 대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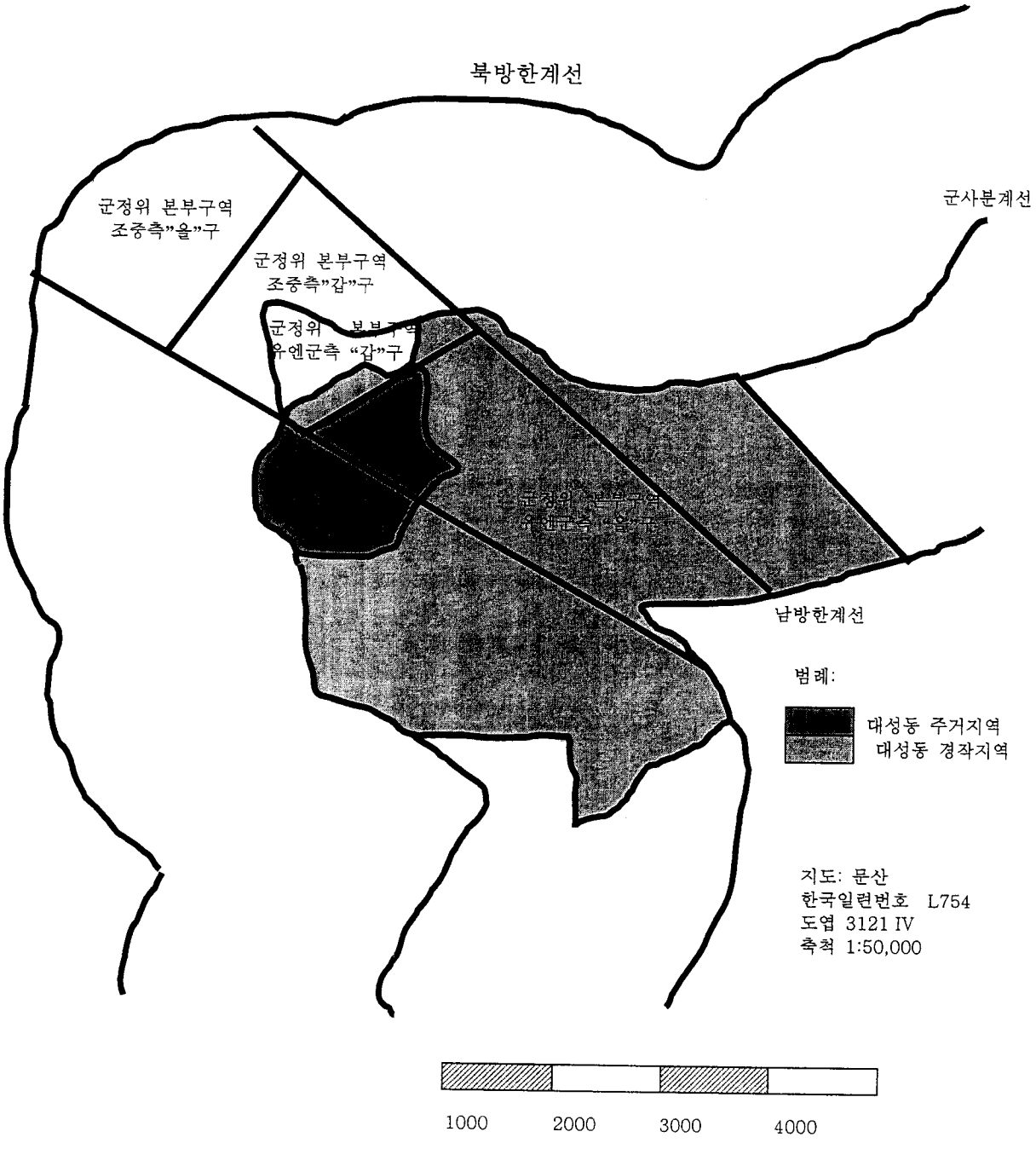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
군정위 본부구역
조중측"을"구
군정위 본부구역
조중측"갑"구
군정위 본부구역
유엔군측 "갑"구
군정위 본부구역
유엔군측 "을"구
남방한계선
범례:
대성동 주거지역
대성동 경작지역
지도: 문산
한국일련번호 L754
도엽 3121 IV
축척 1:50,000
1000
2000
3000
4000

부록 나

도표 3-1

# 군사분계선 표지물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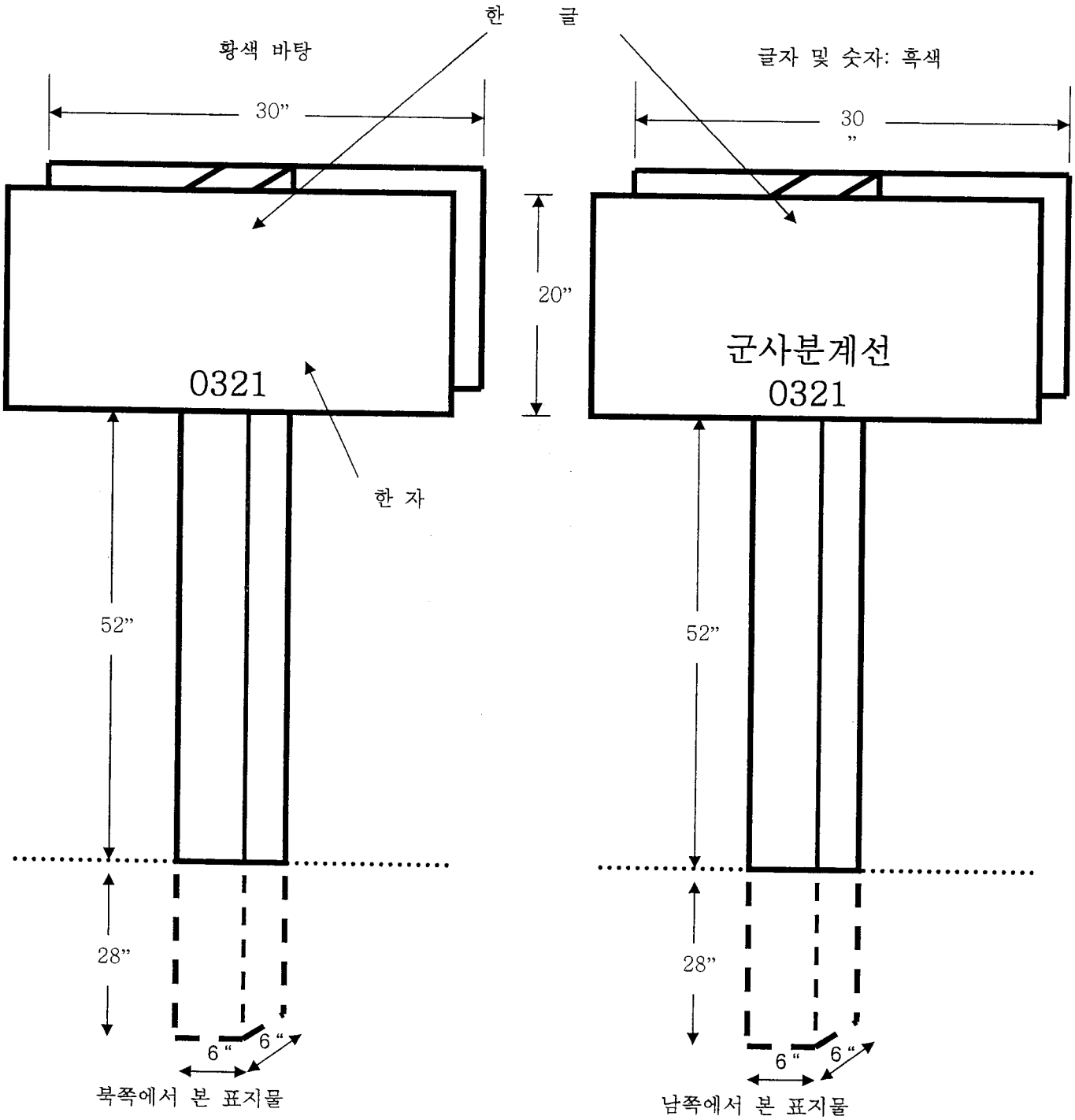


군사분계선 표지물은 석면판 또는 금속판

부록 나

도표 3-2

# 비무장지대
# 군사분계선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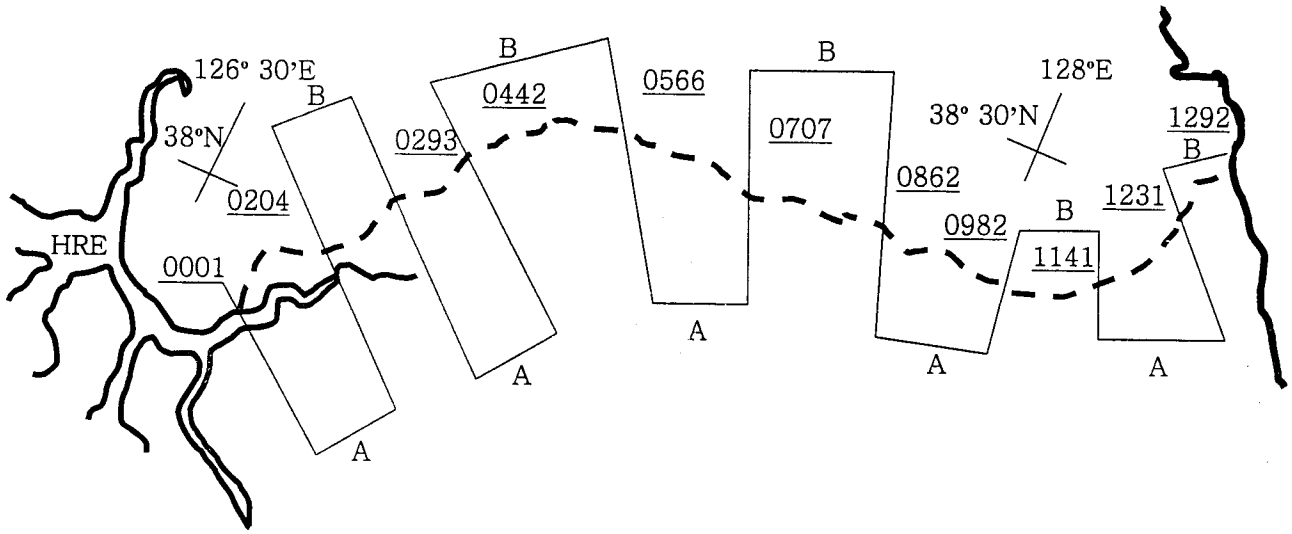


지도: 전술안내도-10 B&C

A = 조선인민군측 구역
B = 국제연합군측 구역

부록 나

도표 3-3

#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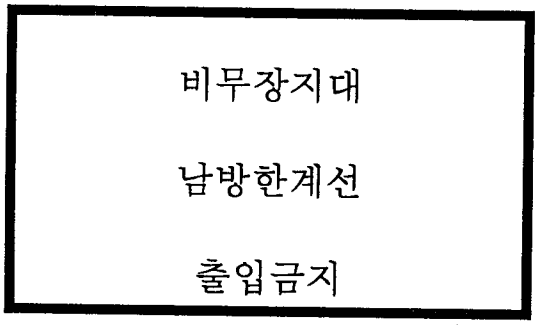


(2인치 크기의 영어 대문자)

표시는 사방 24인치 크기의 장방형으로 백색 바탕 위에 흑색 또는 적색 글자.

부록 나

도표 3-4

# 비무장지대 경고 표시

경고

당신은 지금 비무장지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

(2인치 크기의 영어)

표시는 사방 24인치 크기의 장방형으로 백색 바탕 위에 흑색 또는 적색 글자

부록 나

도표 3-5

# 한강하구 남방한계선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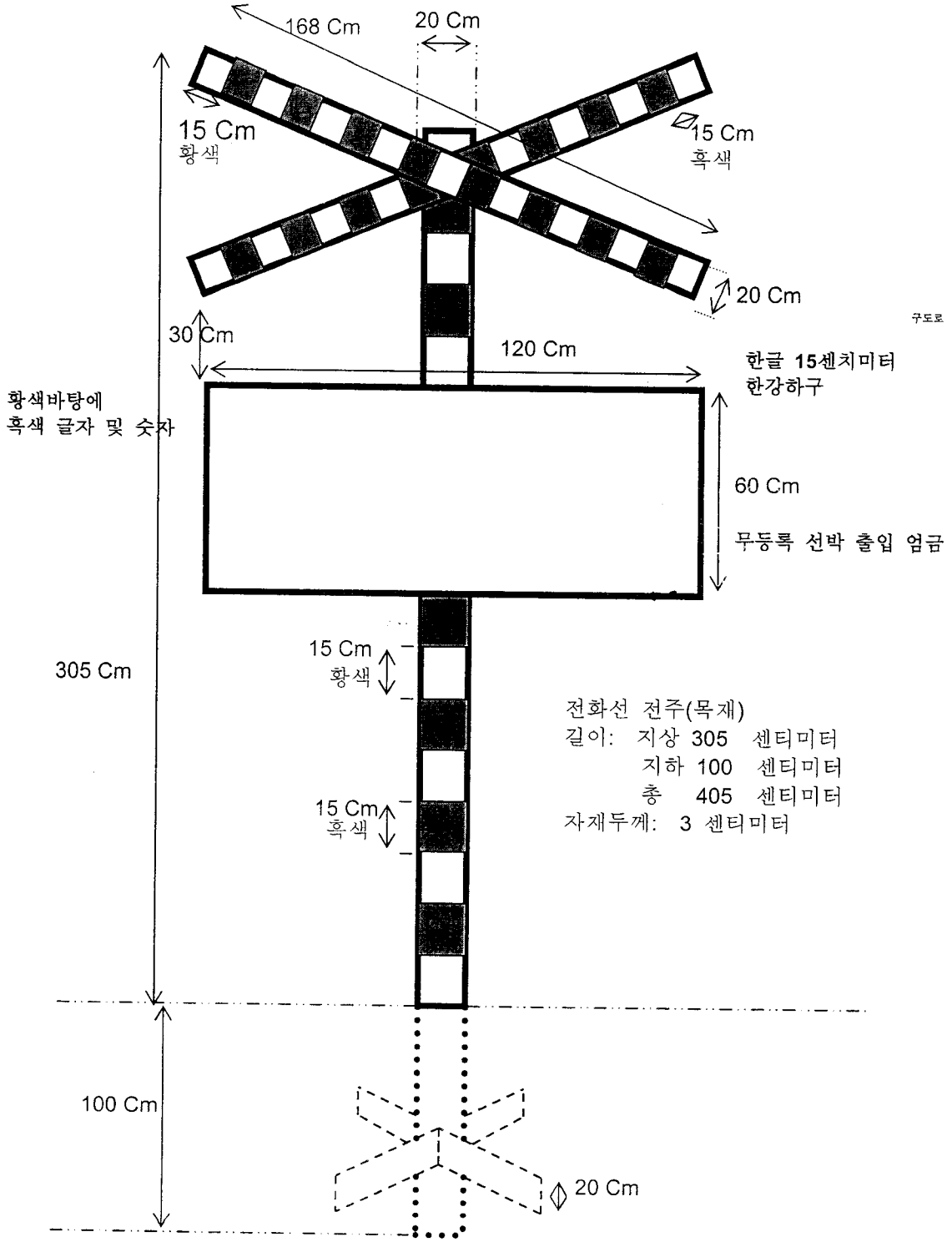

# 부록 나

## 도표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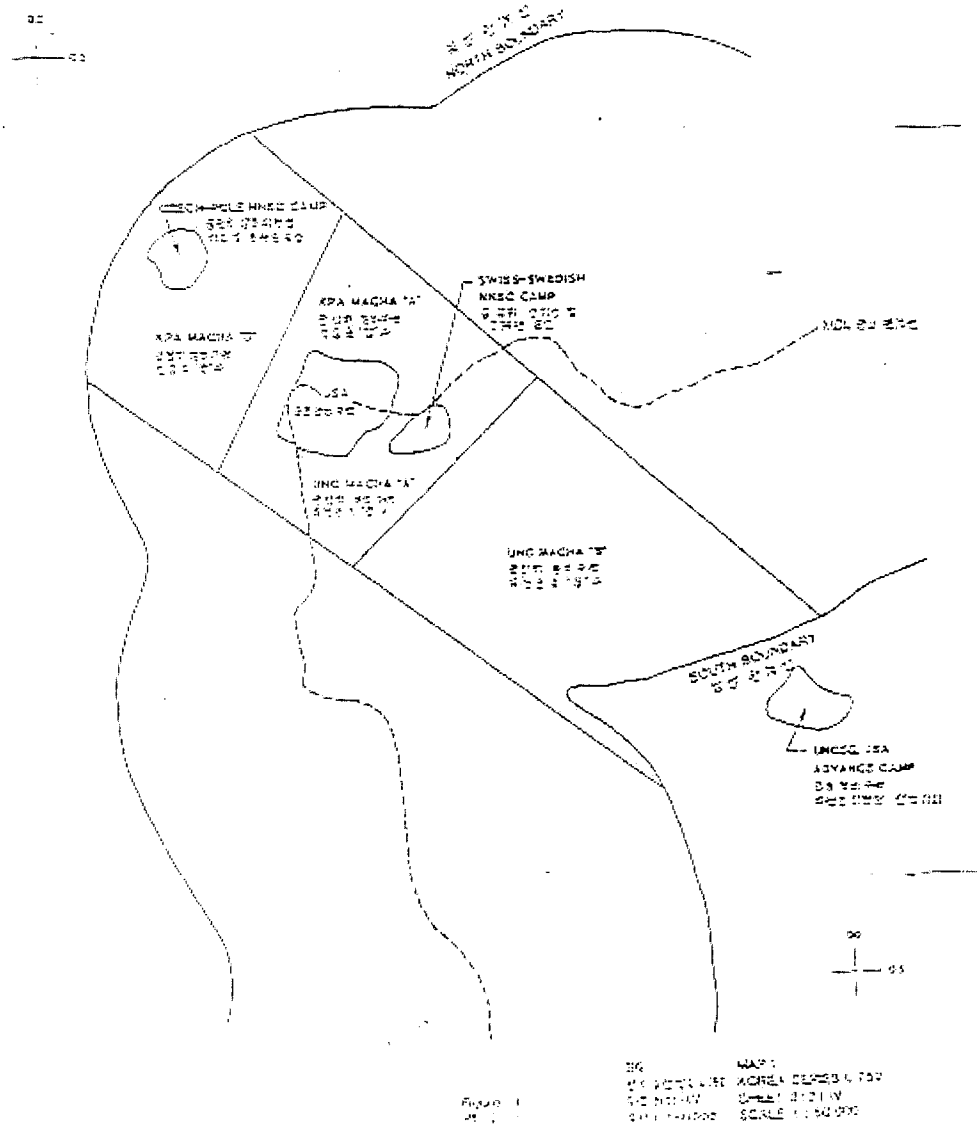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
SWISS-SWEDISH NNSC CAMP
KPA MACHA "A"
KPA MACHA "B"
UNC MACHA "A"
UNC MACHA "B"
SOUTH BOUNDARY
UNCSC JSA ADVANCE CAMP

부 록 나

도표 4-2

# 공동경비구역 군정위 본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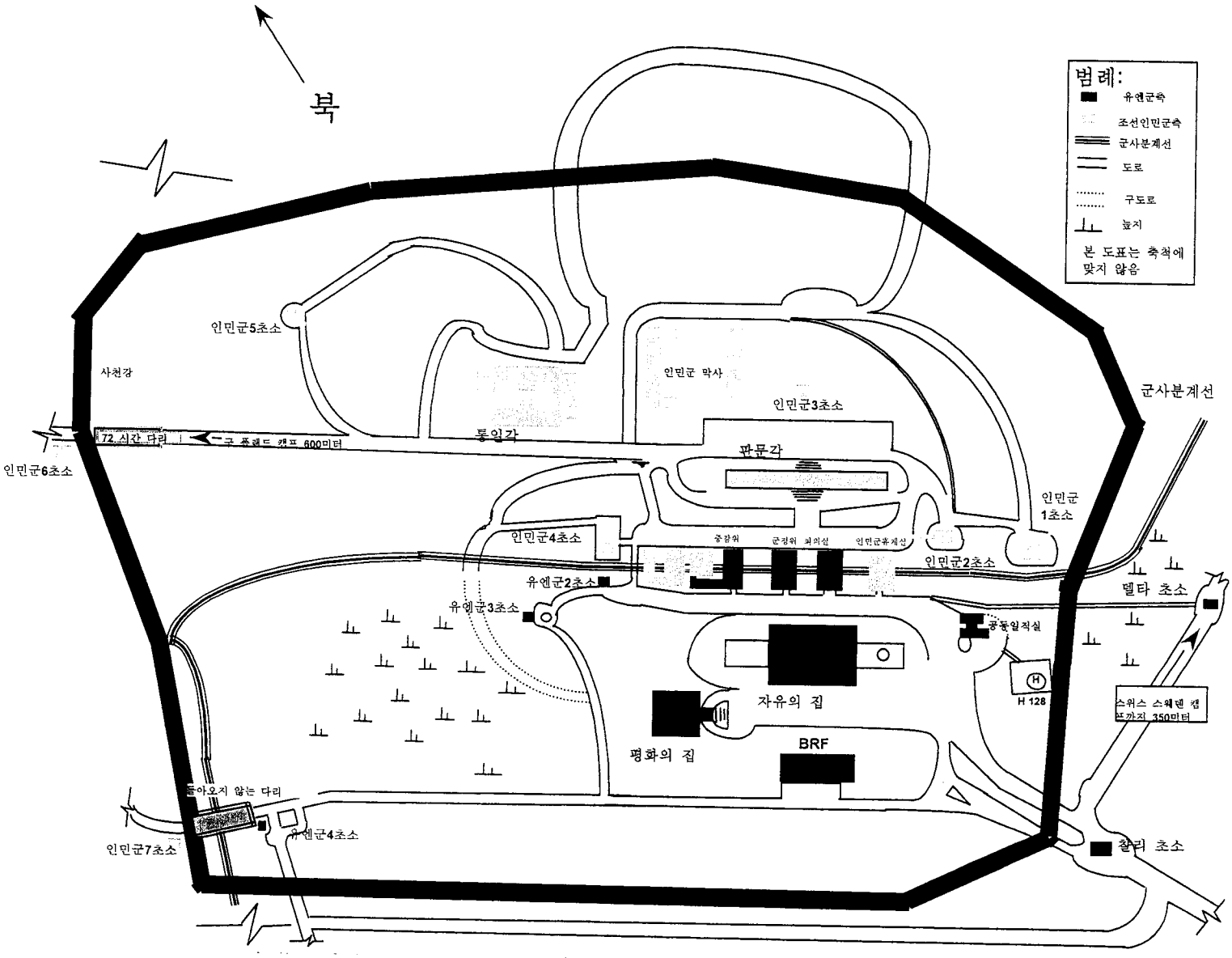

# 부록 나

## 도표 6-1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서 필요한 식별표지

| 인원의 구분 | 차량/선박에 필요한 기 | 필요한 신분증/출입증 | 필요한 완장 | 필요한 식별뱃지 |
|---|---|---|---|---|
| 군정위 유엔군측 위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무 | 무 |
| 군정위 유엔군측 참모 보조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
| 군정위 유엔군측 비서처 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군정위 유엔군측 공동감시소조/ 특별조사반 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출입증 | 헌병완장 | 무 |
| 유엔군측 한강하구 민정경찰 | 유엔기 및 황색 | 비무장지대 영구출입증 | 헌병완장 | 무 |
| 대성동 거주자 | 무 | 대성동 신분증 | 무 | 무 |
| 중감위 스위스/스웨덴위원 | 국기 및 중감위 기 | 중감위 신분증 | 무 | 무 |
| 유엔군측 기자* | 청색, 영어와 한글로 PRESS(기자) 라고 쓰인 기 | 영어와 한글로 된 기자 신분증 | 청색, PRESS(기자) 라고 쓰인 완장 | 무 |
|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출입증 | 헌병완장** | JSA뱃지 |
| 정비/공사인원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 또는 임시 출입증 | 청색 | 무 |
| 방문객*** | 청색 | 무 | 무 | 무 |

* 황색기로 표시한 차량에 의한 수송도 가능.

** 비무장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인원들은 헌병완장을 착용할 필요가 없음.

*** 방문객들은 항상 유엔사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또는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의 보호를 받아야 함.

# 부록 나

## 도표 6-2

##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에서 필요한 식별표지

| 인원의 구분 | 차량/선박에 필요한 기 | 필요한 신분증/출입증 | 필요한 완장 | 필요한 식별뱃지 |
|---|---|---|---|---|
| 군정위 유엔군측 대표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무 | 무 |
| 군정위 유엔군측 참모 보조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군정위 유엔군측 비서처 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군정위 유엔군측 공동감시소조/ 특별조사반 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출입증 | 헌병완장 | 무 |
| 대성동 주민 | 무 | 대성동 신분증 | 무 | 무(야외에서 작업할시 녹색/황색모자 착용) |
| 중감위 스위스/스웨덴인원 및 부양가족 | 국기 및 중감위 기 | 중감위 신분증 (중감위 인원), 비무장지대 영구 출입증(부양가족) | 무 | 무 |
| 유엔군측 기자** | 청색, PRESS(기자) 라고 쓰인 기 | 기자 신분증 | 청색 PRESS(기자) 라고 쓰인 완장 | 무 |
| 공동경비구역 유엔사경비대대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출입증 | 헌병완장*** | JSA뱃지 |
| 정비/공사인원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 또는 임시 출입증 | 청색 | 무 |
| 방문객**** | 청색 | 무 | 무 | 무 |

*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의 "나"구역에서만 인가된 유엔군측 민정경찰..

** 황색기로 표시한 차량으로도 수송이 가능함.

*** 비무장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인원에게는 완장이 필요하지 않음.

**** 방문객은 항상 유엔군측 비무장지대/한강하구 민정경찰 또는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의 보호를 받아야 함.

# 부록 나

## 도표 6-3

## 조중측 인원이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에서 필요한 식별표지

| 인원의 구분 | 차량/선박에 필요한 기 | 필요한 신분증/출입증 | 필요한 완장 | 필요한 식별뱃지 |
|---|---|---|---|---|
| 군정위 조중측 대표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무 | 무 |
| 군정위 조중측 참모 보조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군정위 조중측 비서처 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군정위 조중측 공동감시소조/ 특별조사반 인원 | 황색 | 군정위 신분증 | 황색 | 무 |
| 조중측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중감위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출입증 | 헌병완장 | 무 |
| 체코/폴랜드인원 및 부양가족 | 국기 및 중감위 기 | 중감위 신분증 (중감위 인원), 비무장지대 영구 출입증 (부양가족) | 무 | 무 |
| 유엔군측 기자* | 청색, PRESS(기자) 라고 쓰인 기 | 기자 신분증 | 청색, PRESS(기자) 라고 쓰인 완장 | 무 |
| 공동경비구역 조중측 경비대 정비/공사인원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출입증 | 헌병완장** | JSA뱃지 |
| | 청색 | 비무장지대 영구 또는 임시 출입증 | 청색 | 무 |
| 방문객 | 청색 | 무 | 무 | 무 |

* 황색기로 표시한 차량에 의한 수송도 가능.

# 부록 나

## 도표 7-1

## 공동감시소조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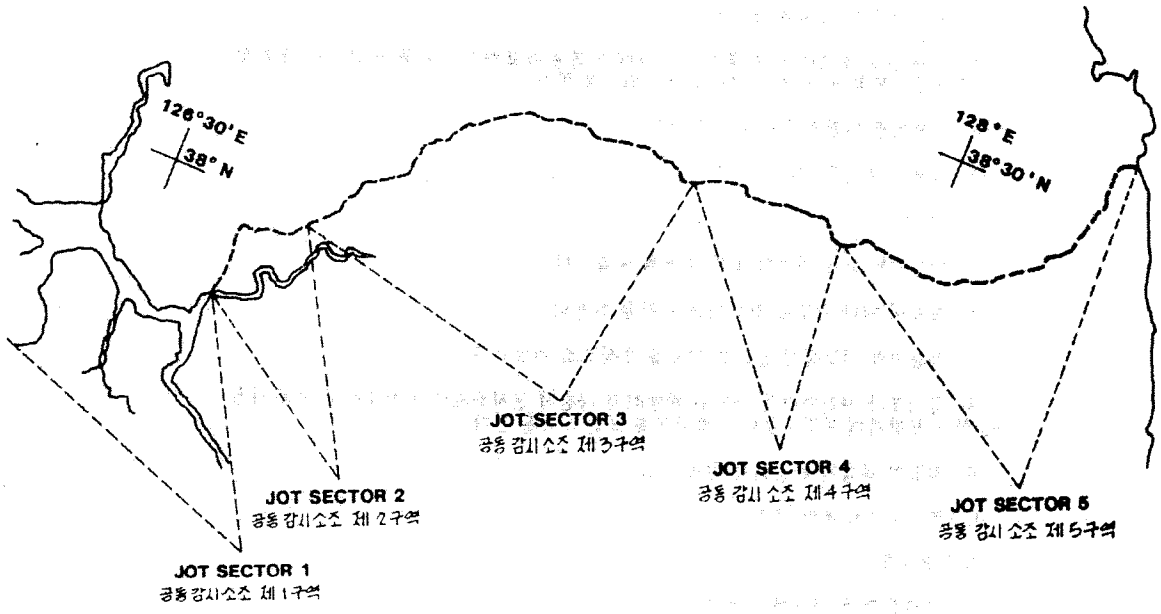

# 부록 다

## 배부처 일람표

4 합참본부, 한국, 서울
6 육군본부, 한국, 대전
6 공군본부, 한국, 대전
6 해군본부, 한국, 대전
10 해병사 본부, 한국, 발안
15 한국 제 1군 사령부 사령관
15 한국 제 3군 사령부 사령관
10 한국 제 2군 사령부 사령관
15 제 7 공군 사령관
15 미8군 사령관
6 주한 미해군사
6 주한 미해병사
2 특전사
2 연합사 비서실
2 유엔사/연합사 참모장
2 유엔사/연합사 정보참모부
2 유엔사/연합사 작전참모부
2 유엔사/연합사 기획참모부
50 유엔사/연합사 작전참모부 작전과
2 유엔사/연합사 법무실
1 유엔사 후방사
10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2 주한 미군사 고문단장
5 유엔사 공동경비대대장
10 제 17 항공여단장
10 제 19 지원사령관
합참 정보참모본부장
합참 작전참모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본부장